

지적재산권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2007. 10.

이 기 형

보 험 개 발 원
보 험 연 구 소

머 리 말

21세기 이전까지는 천연자원, 노동력, 자본 등의 물적 자원이 부를 창출하는 데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 부를 형성하게 된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지적재산이야말로 기업의 중요한 자원이며 고부가가치 자산인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영국 등 EU국가들은 자국의 지적자산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적재산활동을 2004년 내국인 특허출원건수로 보면 일본, 미국에 이어 3위에 해당하며, 인구 100만명 당 출원건수인 특허첨투도로는 2,189건으로 일본 2,884건에 이어 두 번째이며, GDP 10억 달러 당 출원건수인 특허밀도로는 116.2로 세계 1위의 위상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위상은 곧 국가 경제력과 향후 성장잠재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적재산권의 리스크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노출되어 있고 가액의 평가가 어려운 점 등이 있어 기업이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EU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소송보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에 있어서 보험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EU의 현황을 조사하여 활용방안을 정리하였다. 이 보고서가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에 있어 보험솔루션을 제공하고, 보험산업이 국가의 지적자산을 보호하는 든든한 후원자역할을 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2007년 10월

보 험 개 발 원
원 장 정 채 웅

목 차

요 약	1
I. 서 론	17
II.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리스크 특성	21
1. 지적재산권의 종류	21
2. 지적재산권 리스크의 특성	25
III. 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와 보험	29
1. 지적재산권 리스크 발생현황	29
2. 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 필요성	38
3. 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 방법	41
4. 리스크관리에서 보험 효과	48
IV. 주요국의 지적재산권 보험 운영현황	51
1. 미국	51
2. 유럽국가	55
3. 일본	59
V. 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에 보험 활용방안	65
1. 보험활용 필요성	65
2. 보험 활성화를 위한 요건	68
3. 보험상품 활성화 방안	72
VI. 결론	80
참고문헌	80
부 록	85
I.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현황	85
II. 지적재산권 관련법규의 국제비교	94

표 목 차

<표 I-1> 한국의 특허출원 세계 위상(2004)	18
<표 II-1> 지적재산권의 분류 및 관련법규	22
<표 II-2> 지적재산권 관련 리스크 유형	26
<표 II-3> 지적재산권 침해시 법적 보호수단	27
<표 III-1> R&D 투자와 출원·심사·심판청구 현황	30
<표 III-2> 연구주체별 R&D투자와 심판청구 현황	31
<표 III-3>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32
<표 III-4>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33
<표 III-5> 국내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권리별 처리현황	34
<표 III-6> 연도별·지역별 피침해 현황	35
<표 III-7> 지적재산권 권리별 피침해 현황	36
<표 III-8> 해외로부터 지적재산권 침해유형(2005)	36
<표 III-9> 외국기업과의 기술분야별 특허분쟁 건수 ('00년~'06년)	38
<표 III-10> 지적재산권 관련 리스크발생 손인(Peril)	42
<표 III-11> 지적재산권 침해관련 법규 현황	45
<표 III-12> 지적재산권 관련 보험전가 시장 현황	47
<표 III-13> 지적재산권 관리 전담 조직 운영현황	48
<표 III-14> 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로열티 수익 현황	50
<표 IV-1> 미국 IPISC의 지적재산권 보험사례	54
<표 IV-2> EU국가의 특허 소송 등 비용 현황(2004)	57
<표 IV-3> EU의 특허소송보험 도입방안	58
<표 IV-4> 유럽국가별 특허소송보험 도입의향	59
<표 IV-5> 일본 지적재산권 라이선스보험의 보험료	63
<표 V-1> 국내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현황	65
<표 V-2> 국내 산업재산권의 심판청구 및 소송제기율 추이	66

<표 V-3> 주요국의 지적재산권 보험 운영현황 비교	68
<표 V-4> 국내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한 인식	70
<표 V-5> 미국과 일본의 보상한도액, 공동보험비율 운용조건	73
<표 V-6>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추이	76
<표 V-7> 신지식재산에 대한 소관부서 현황	77
<표 V-8> 지식재산 관련 부처 소관 법률	78
<표 VI-1> 각국별 기술무역액(2003년)	80
<표 A-1>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	85
<표 A-2> 주요국에 대한 국내의 특허출원 추이	86
<표 A-3> 한국인 국제특허 및 외국인 국내특허 출원 추이	87
<표 A-4> 산업재산권별 연도별 등록 추이	88
<표 A-5> 지적재산권의 법인별, 내외국인별 등록 추이	89
<표 A-6> 지식재산별 내외국인 등록, 소멸, 존속 현황	90
<표 A-7> WIPO 주관하의 지적재산권 관련 협약	92

그림 차례

<그림 III-1> 한국의 GDP대비 R&D투자비율 추이	29
<그림 III-2> 지식재산 및 R&D 관리 사이클	39
<그림 III-3> 지식재산관리의 프로세스	40
<그림 III-4> 지적재산권 불침해 판결건수 추이	43
<그림 III-5> 지식재산리스크의 보험 활용한 부의 창출	49
<그림 V-1> 산업재산권의 연도별 소송제기율 현황	67
<그림 A-1>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대비 등록건수 비율 추이	88

요 약

I. 서론

- 21세기의 지식기반경제사회(knowledge based economy)에서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기업이나 국가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여 국가차원에서 자국 기업의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2004년 내국인의 특허 출원건수는 일본, 미국에 이어 3위에 해당하며, 100만명당 출원건수인 특허침투도(patent penetration)로는 일본(2,884건)에 이어 2,189건으로 2위이며, GDP 10억 달러당 출원건수인 특허밀도(patent density)로는 116.2로 세계 1위임.

한국의 특허출원 세계 위상(2004)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특허 침투도	2,884 일본	2189 한국	645 미국	587 독일	479 호주	402 뉴질랜드	384 핀란드
특허 밀도	116.2 한국	107.3 일본	22.6 독일	18.7 뉴질랜드	17.7 미국	17.6 러시아	17.2 호주

자료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2007), pp.15-16를 인용하여 작성함.

-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위상에 따라 향후 선진국 기업들과의 지적재산권 분쟁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는 아주 미흡한 실정임.
- 지적재산권의 리스크관리에 있어 보험제도는 선진국들의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 지적재산권보험을 통한 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함.

II.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리스크 특성

1. 지적재산권의 개념

-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 부터 생기는 성과 중 법률적 보호대상이 되는 권리”, “인간의 사상으로 부터 창출된 모든 권리, 즉 지적재산을 소유하는 권리”로 정의됨.
- 지적재산권 종류를 WIPO 설립조약 제2조에서 보면 “①문예·미술 및 학술저작물, ②실연가의 레코드 및 방송, 인간 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③과학적인 발견”과
- “④의장(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감지될 수 있는 것), ⑤상표·서비스표시 및 상호, 기타 상업상의 표시로서 부정경쟁을 방지함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권리 또는 산업·학술·문예 및 미술 분야에 있어서의 지적활동으로 부터 생기는 권리”로 되어 있음.
- 지적재산권의 분류
 - 지적재산권은 지식재산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됨
 - 지식재산권은 지식 그 자체로서 인정되는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영업비밀보호권 등이며
 - 산업재산권은 산업적 응용으로 인정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디자인권), 상표권이 해당됨.

2. 지적재산권 리스크의 특성

- 지적재산권리스크(Intellectual Property Right Risk)는 기업 등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지적재산권 피침해 또는 다른 주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으로
- “불특정 제3자와 관련된 리스크”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자신과 관련된 리스크”로 구분됨.

지적재산권 관련 리스크 유형

구 분	제3자 관련 리스크	당사자 관련 리스크
리스크 발생	자신이 다른 기업 등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경쟁기업 등 제3자가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리스크 결과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발생	자신의 기대수익 상실 가능성 발생
리스크 대처 포지션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로부터 방어하는 포지션	제3자로부터 회수하기 위한 공격적 대처 포지션

자료 : Zaneta Jaunzeme(2005)에서 요약 정리하였음.

□ 지적재산권 리스크의 법적 구제방법

-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지적재산권 형사소
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특허소송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음

지적재산권 침해시 법적 보호수단

구 분	법적 보호수단
1.지적재산권 형사소송	1.고소와 고발 2. 검사기소
2.지적재산권 일반 행정소송	1.취소소송 2. 무효 등 확인소송 3.부작위위법확인소송
3.지적재산권 민사소송	1.침해금지 청구소송 2. 손해배상청구소송 3.신용회복청구 소송 4.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5.손실보상청구 소송
4.특허소송	1.심결청구 소송 2. 상고 3. 보상금 및 대가소송
5.특허심판	1.거절결정불복 심판 2. 특허취소결정불복 심판 3.특허무효심판 4.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소심판 5.권리범위확인 심판 6. 정정심판 7.정정무효심판 8. 통상실시권 허여(許與) 심판

자료 : 최용규 · 박동준 · 김관조(2004), pp.23-24.

Ⅲ. 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와 보험

1. 지적재산권 리스크 발생현황

□ 심판청구 현황

- 심판청구건수는 2005년 12,751건으로 1998년 대비 99.8%가 증가했으며, 특히, 연구개발비 투자와 직접 관련되는 특허와 실용신안 분야 심판청구건수는 2005년 7,927건으로 1998년 대비 161%로 대폭 증가하였음.

산업재산권 심판청구 현황

(단위 : 천억원, 건, %)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년 증감율
특 허	2,277	3,298	1,994	3,004	3,376	3,821	4,798	7,141	48.8
실 용	758	783	591	904	887	788	827	786	-5.0
디자인	584	629	508	526	559	594	544	480	-11.8
상 표	2,762	2,703	2,403	2,594	2,907	3,195	3,498	4,344	24.2
계	6,381	7,413	5,496	7,028	7,729	8,398	9,667	12,751	31.9

□ 특허법원 소송 추이

-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 승복하지 아니하고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8개년 연평균 847건, 소송 제기율은 연평균 22.3%에 이르고 있으며, 2005년에는 19.3%로 연평균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음.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단위 : 건,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심판원심결	7,820	7,279	6,079	5,995	6,890	7,120	8,877	11,904
소제기 가능 심결	3,559	3,823	3,204	3,069	3,293	3,605	4,580	5,754
소 제 기	685	995	797	726	840	747	873	1,111
제소율	19.2	26.0	24.9	23.7	25.5	20.7	19.1	19.3
판결건수	662	911	791	796	776	752	855	938
취소판결	176	235	188	217	236	206	219	246
취소율	26.6	25.8	23.8	27.3	30.4	27.4	25.6	26.2

□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비율은 2005년 39.0%로 전년도 42.4%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고 최근에 들어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단위 : 건,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특허법원 판결		662	911	791	796	776	752	855	938
상 고	건 수	311	316	393	355	308	300	363	366
	상고율	47.0	34.7	50.0	44.6	39.7	39.9	42.4	39.0
대법원 선고		283	241	365	461	368	283	383	303
파 기	건 수	35	24	27	66	61	32	41	45
	파기율	12.4	10.0	7.4	14.3	16.6	11.3	10.7	14.9

□ 해외 분쟁현황

- 최근 6년간(2000-2005)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은 166개 기업으로 매년 17.8% 증가하고 있음.
- 건수로는 209건이며 피침해 권리별로는 상표권이 52.6%로 가장 많이 점유함.

해외로부터 지적재산권 피침해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특허·실용	6	5	13	18	6	10	58
디자인	3	4	5	1	2	10	25
상 표	7	11	23	29	18	22	110
기 타	-	1	1	2	3	9	16
계	16	21	42	50	29	51	209

2. 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 방안

- 리스크관리는 리스크의 확인, 평가, 관리방법 선택, 모니터링의 단계로 추진하나, 지적재산권의 리스크관리는 다른 리스크에 비해 차이가 있음.
- 지적재산권의 리스크를 다음과 같이 5개 익스포저(IP Risk Quadrants)로 구분하여 확인 및 평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지적재산권 관련 리스크발생 손인(Peril)

구 분	소송비용	가치영향(Impact)
지적재산권 소유자와 관련된 리스크(1st Party : 원고)	1. 지적재산권 보장 비용	2. 기업의 가치 손실이나 산업에서 위상 상실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제3자 관련 리스크(3rd Party : 피고)	3. 방어비용 발생	4. 제3자에 대한 손해 야기
5. Title(권리보장리스크)	지적재산권 유지 및 방어 비용	권리의 지분감소 또는 손실

자료 : Kimberly K. Cauthorn(2004)에서 요약하였음.

- 다음은 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 방법 결정 및 실행 등 전략수립이 필요함.
 -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리스크관리는 보험제도에 전가하여 관리하고 있음. 리스크관리의 전략은 리스크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지전략(prevention strategy)과 리스크가 발생한 경우 소송비용 부담, 손해배상액 부담 등을 대비한 보험가입 등을 하는 재무적 전략(financial strategy)으로 구분하여 추진.
 - 재무적인 대책의 사전적 방법은 기금적립, 자가보험(self insurance) 운영을 들 수 있으며, 사후적인 대책으로 지적재산권보험을 들 수 있음.

□ 지적재산권 리스크의 보험전가시장 현황

지적재산권 관련 보험전가 시장 현황

담보 구분(익스포저)	영위 보험회사	기타 대책
1.자기기업의 법 집행비용 (1st Party IP Exposure)	IPISC, Ambridge, The Hartford	컨틴전시비용 지적재산권지주회사 투자자, 캡티브
2.자기기업의 가치/수익/위 상 손실(1st Party)	Kiln(로이드), IPISC Swiss Re	
3.제3자 침해시 방어비용 4.제3자의 침해에 따른 손해	AIG, Chubb, Venture Program(로이드), IPISC, Swiss Re, Certain 로이 드 신디케이트, Allianz, Quanta	캡티브 자가보험(준비금) 보상조항
4.제3자의 침해에 따른 방어 비용/침해손해 한도 담보	AIG, Hartford, Ambridge, 로이드	에스크로우 신용장
5.지적재산권 소유권 분쟁 (자신 권리, 제3자 배상)	Chubb, 로이드	캡티브 자가보험(준비금), 에스크로우

자료 : Kimberly K. Cauthorn(2004), p.16.

IV. 주요국의 지적재산권 보험 운영현황

1. 미국

-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재무적 방법으로는 다음 세 가지가 있음.
- 첫 번째, 전통적인 보험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적재산권보험서비스회사(IPISC : Intellectual Property Insurance Service Corporation)가 관련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회사들(Hartford, XL Insurance Co., Evanston Insurance Co.)에게 중개하며, 인수한 보험회사들은 상호 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위험분산을 하고 있음.
 - 다른 형태로는 소송리스크관리회사(LRM : Litigation Risk Management)가 고객에게 법률소송컨설팅을 해주면서 영국 로이드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 두 번째는 최근 설립된 특허교환소(patent exchange)와 업무제휴를 하고 있는 Priceline에서 산업재산권을 포함한 영업기밀 등 포괄적인 지적재산권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한 보험상품을 제공함.
- 세 번째는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적재산권 관리서비스를 하는 벤처캐피탈 회사(Refac)가 보험상품을 제공.

□ 보험상품의 특징

- 미국의 지적재산권보험은 특수한 보험영역으로 인식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에서 담보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보험상품을 운영하고 있음.
- 미국에서의 지적재산권 관련보험은 법적소송관련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과 소송비용 및 손해보상금을 보상하는 보험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음.

미국 IPISC의 지적재산권 보험사례

	Defense Cost Insurance	IP Abatement Insurance
보험관리자	Intellectual Property Insurance Services Corporation	
보험회사	Gotham Insurance Company	Gotham Insurance Company
가입대상권리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보상한도액	1청구당 및 연간 한도액 10만달러 ~ 500만달러	1청구당 및 연간 한도액 10만달러 ~ 500만달러
자기부담금	최저 보상한도액의 2%	최저 보상한도액의 2%
Coinsurance	최저 10%	최저 20%
담보지역	미국, 계약자가 미국내에 있는 경우 전세계를 담보지역으로 함	미국

담보비용	-보험기간내에 계약자에게 제기한 침해소송(covered litigation) -당해 지적재산권을 특허청으로부터 재확인하는 비용 -계약자의 지적재산권에 발생한 손실 보상	-보험기간 내에 제3자가 계약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계약자가 제기한 소송비용 -제3자가 특허침해에 따른 배상금 청구시 방어비용 -당해 지적재산권을 특허청으로부터 재확인하는 비용 -소송기간동안 특허 재발급비용
면책내용	-고의적인 침해행동 -증권상 명기되지 않은 소송 -벌금, 징벌적 배상금 등의 직간접 손실 -범죄적 행동 -석면 및 핵 배상책임	-침해자의 불법성이 사전에 존재하는 행위 -재판과 손해에 따른 배상금액 -소송이전의 발생한 비용 -지적재산권 등록자의 계약파기 -피보험자의 의도적인 침해행위 -범죄적 행동
최저보험료	-	LOL 10만/10만달러 : 1,475 \$ LOL 10만/30만달러 : 10,200 \$

자료 : <http://www.infringeins.com/>

2. 유럽 국가

- 유럽연합(EU)은 회원국 간의 통합적이고 전략적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두고 “성장하는 유럽을 위한 의제” 차원에서 지식재산 권보호 정책을 추진.
- 이러한 차원에서 EU는 최근 특허소송보험(patent litigation insurance)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동안 EU 국가들은 개별 국가별 사정에 맞게 지적재산권 보험을 운용하고 있었음.
- 영국은 로이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등도 보험제도가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적정 수익확보 곤란으로 상품공급이 적은 실정임

- 독일의 경우에는 ARB, Gerling Global Re, Allianz 등이 지적재산 권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 EU의 특허소송보험 도입방안

- 경제적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SME :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의 지적재산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대안마련의 일환으로 특허소송보험의 도입이 진행되고 있음.
- 이를 위해 EU에서는 2003년,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특허소송보험도입에 관한 보고서가 나왔으며, 이에 수록된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EU의 특허소송보험 도입방안

보험요소	주요내용
1.법제화	강제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은 필수
2.보험료	연간 300 파운드에서 600파운드
3.공동보험	피보험자가 최초 5000파운드 부담
4.담보(조사)	보험비용 35,000파운드
5.리스크평가	사고 후 평가
6.담보(손해액)	150만 파운드
7.담보지역	EU 국가만 담보
9.특허권 담보 강제화	모든 신규 특허권은 담보를 강제화
10.특허수와 관계	보험료의 감소는 하지 않음
11.기술고려	기술진보 여부와 무관하게 고정보험료 적용
12.담보지역	담보지역 추가여부에 관계없이 고정보험료 적용
13.담보기간	고정보험료 적용
14.중재	의무적임

자료 : CJA Consultants Ltd(2003), p.58.

- EU가 제안하고 있는 특허소송보험에 대해 각 국가들의 의향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회원국들은 보험수요에 대해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으

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는 주로 법률비용보험이 활용되고 있음.

- 보험도입제도화 요소 중 중요한 사항을 보면, 임의보험방식이 많고,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와 EU역내만을 담보지역으로 하고 있다는 점임.

유럽국가의 특허소송보험 도입 의향

국가별	현재 보험상품 운영현황			향후 도입의견
	보험수요	상품존재여부	제공방법	
오스트리아	없음	없음	-	세제혜택, EU만담보
벨기에	없음	법률비용보험	중개사	임의보험, 세제혜택
스위스	수요가 큼	없음	-	임의보험, 세제혜택, 전 세계담보
독일	최근 있음	없음	-	임의보험, 세제혜택, EU만담보
프랑스	약간 있음	법률비용보험	중개사	EU안 도입
덴마크	최근 있음	법률비용보험	중개사	임의보험
그리스	-	없음	-	임의보험, 세제혜택, EU만담보
네덜란드	약간 있음	법률비용보험	-	임의보험, 세제혜택, EU만담보
스페인	없음	없음	-	세제혜택, 전 세계담보
영국	약간 있음	법률비용보험	보험회사, 중개사	강제보험, EU한정담보

자료 : CEA Position paper on Feasibility study on a patent litigation insurance, 2006.7.6(<http://www.cea.assur.org/cea/v1.1/posi/pdf/uk/position306.pdf>)

3. 일본

- 일본에서는 1994년에 지적재산권소송비용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기술사용료 손실을 담보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라이선스보험을 운영하고 있음.
- 지적재산권소송비용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과는 독립된 상품으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을 침해받은 경우(피침해조항)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소송비용을 담보하는 침해조항으로 구성된 상품임.

- 지적재산권 라이선스보험은 무역보험에서 운영하며, 전쟁, 내란 또는 적용 국가의 외환부족 등으로 그 대가를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입게 되는 컨틴전시 리스크(contingency risk)와 상대방의 파산이나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에 의해 기술사용료 등의 대가를 회수할 수 없는 신용리스크를 담보함.

V. 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에 보험 활용방안

1. 보험활용 필요성

- 국내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국제경쟁력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미흡한 실정임.
- 지적재산권 침해는 매년 3만건이상 발생하며, 관련된 인원은 4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구속자도 1,000여명에 이르고 있음.
- 또한 최근 7년(1999-2005)간 산업재산권 소송 제기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심판 청구율 5.8%, 특허법원 소송율 0.57%, 대법원 상고율 0.23%에 이름).
- 그럼에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에 보험제도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1세기에 기업의 지식재산경영은 경쟁력 확보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며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분쟁으로 인해 파산하는 것과 같은 문제점이 예견될 수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보험을 통해 할 필요성이 있음.

2. 보험상품 활성화 방안

- 일반적인 영업배상책임보험상품으로는 지적재산권의 리스크관리 수요에 부응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독립적인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상품은 초기에 미국이나 유럽국가의 지적재산권 보험 상품을 벤치마킹하여 국내화 시도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상 지적재산권은 초기에는 특허권에 한정하여 운영한 뒤에 산업재산권으로 확대하고, 그 후에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담보리스크(covered risk)는 “제3자 리스크 대처 포지션”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 policy)담보방식으로 하고 배상책임리스크나 기대수익 상실 리스크는 제외함.
 - 보상한도액(limit of liability)을 무한으로 하거나 너무 고액으로 운영하는 것은 보험시장의 건전성을 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보다 경험이 있는 선진국 보험회사들의 사례를 검토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단체보험형태로 보험상품 운영
- 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의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못해 기업 스스로 보험가입 등의 적극적인 리스크관리 대책 마련 및 시행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고 리스크가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 미국과 같이 국내의 통합적인 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 서비스기관 또는 산업별 협회 등을 통한 단체보험형태의 운영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보험가입 유인제도 도입을 통한 가입 활성화
-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한 대출 등 금융제도에 있어서 보험증권의 요구
 - 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보험료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지원방안을 마련
- 지적재산권 관리 체계 및 통계의 통합적 관리
- 지적재산권의 관리 체계가 정부부처별로 산재해 있어 일원적인 관리

가 미흡하고 피해통계와 통상 국가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못해 국내 실정에 맞는 위험을 산출이 곤란한 상태임.

- 지적재산권 리스크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위하여는 침해 또는 피침해, 법원의 판결통계가 효과적으로 집적될 필요성이 있음.

VI. 결 론

- 21세기에 경제성장의 중심에서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그 경제적 가치가 빠지고는 성립되지 못하게 될 것임을 감안해 지적재산권의 리스크관리는 더욱 부각될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2004년 기준 특허출원률은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에 이며, GDP 10억 달러당 출원건수는 세계1위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 기술무역액은 24억달러 적자로 미국, 일본 등 기술선진국에 비해 기술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에 있음.
- 또한 국내 기업들의 활발한 지적재산활동에 비해 리스크관리는 일부 대기업만을 제외하고는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는 더더욱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하여 EU와 같이 의무보험형태의 보험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지적재산권보험을 통한 리스크관리를 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이 활발한 지적재산권 개발을 할 수 있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I. 서 론

앨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revolutionary wealth)에서 21세기에는 정보지식이 부를 형성하는 원천이 되어 시간과 공간혁명을 통해 부가 이동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러한 부는 지식에 기반한 경제사회(knowledge based economy)에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즉 과거에는 부의 창출과 경제 성장의 원천이 천연자원, 노동, 자본 등 물적 자원이었다면 21세기에는 과학기술특허, 브랜드, 디자인, 저작권 등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 한 기업이나 그들이 속한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에 따라 국가경쟁력의 비교우위 기준도 예전의 군사력에서 기술력, 정보력으로 전환되었고 지식과 기술개발을 둘러싼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 간 경쟁은 WIPO, WTO, APEC 등 다자간 무대에서 통상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통상압력의 핵심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적재산권이 국제통상 마찰의 “핫이슈”로 등장함과 동시에 국가 간 FTA에서도 지적재산권에 관한 것이 독립적인 협상 분야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과 FTA협상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EU와도 쟁점사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세계경제의 통합화 및 자유무역 활성화는 지적재산권 제도의 글로벌화를 촉진하여 특허협력조약과 마드리드시스템에 의한 출원 및 가입국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특허법(PLT, SPLT), 상표법(TLT)은 보호내용, 방법, 대상 등이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 수준으로 통일화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 출원이 급증하기 시작한 80년대 이후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보호의식이 강화되면서 국가간, 기업간, 개인간 지적재산권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막대한 법률비용의 부담과 손해배상금을 부담해야 하며 영업 손실도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2004년 기준 내국인 특허 출원현황을 보면, 건수 기준으로는 일본, 미국에 이어 3위에 해당하며, 100만 명당 출원건수인 특허침투도(patent penetration)로는 일본(2,884건)에 이어 2,189건으로 세계 2위이며, GDP 10억 달러당 출원건수인 특허밀도(patent density)로는 116.2로 세계 1위이다.

<표 1-1> 한국의 특허출원 세계 위상(2004)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특허 침투도	2,884 일본	2,189 한국	645 미국	587 독일	479 호주	402 뉴질랜드	384 핀란드
특허 밀도	116.2 한국	107.3 일본	22.6 독일	18.7 뉴질랜드	17.7 미국	17.6 러시아	17.2 호주

자료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2007), pp.15-16를 인용하여 작성함.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위상에 따라 향후 선진국 기업들과의 지적재산권 분쟁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지적재산권 분쟁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 양국 간의 분쟁은 조만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과 제도상의 정비를 마무리 짓고 이제 그 실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이에 따라 무역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의 첨단제품 생산 없이는 국제경쟁력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기술선진국에 비하여 원천기술이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21세기에 한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계속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경영 즉 지식재산경영을 해야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정부도 기업의 지식경영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면에서 특허청은 1995년에 지적재산권 침해분쟁 소송비용

을 담보하는 지적재산권관련보험(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surance)을 손보업계와 공동으로 개발을 검토한 바 있었으나, 보험상품이 제도화되지 못하였다. 동 보험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 오래전부터 운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관련법 체계가 유사한 일본도 1994년부터 개발, 판매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관리가 제도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제도화의 근간은 보험제도이지만, 아직 미비된 점이 많이 있고 국내기업들의 인식도 낮은 상태이다. 세계 굴지의 기업인 S전자는 휴대전화의 한글 입력방식인 ‘천지인’ 특허권을 둘러싸고 2002년부터 소송중에 있으며 패소하는 경우 900억원을 배상해야 하며, 기업의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S전자가 미국 회사라면 AIG, InsureCast사 등이 판매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보험(Intellectual Property Insurance)에 가입하여 특허권을 둘러싼 분쟁의 법정 비용은 물론 사후처리까지를 원할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보도가 있었다.¹⁾

따라서 본 보고서는 지적재산권보험을 통한 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6개장과 부록 2개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본 연구의 배경과 범위에 대해 기술하였고, 제2장은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지적재산권의 리스크 종류와 리스크발생시 법적 구제수단을 살펴보았으며, 제3장은 지적재산권 리스크의 발생현황을 분쟁 및 소송제기현황으로 분석하고, 리스크관리의 필요성, 리스크관리방안과 보험의 효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4장은 미국, 유럽국가, 일본의 지적재산권관련 보험제도 운영현황을 문헌 조사하여 정리하였고, 제5장에서는 국내에서의 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에 보험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한 요건을 분석하고 향후 활용방안을 검토하였다. 제6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를 요약하였으며, 부록으로 국내 지적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현황, 국제조약 가입현황, 지적재산권관련 법률의 국제비교를 제시하였다.

1) 박수호·김정혁, 『매경이코노미』, 2006.11.13

II.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리스크 특성

1. 지적재산권의 종류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독점금지법의 영향을 받아 과거에는 법률가 또는 기업 등에서 “무형재산권(immatetrial Ƨterrecht)”이라는 용어으로써 사용되어 졌으나, 1967년에 설립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적재산권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 부터 생기는 성과 중 법률적 보호대상이 되는 권리”를 말하며 또 다르게는 “인간의 사상으로 부터 창출된 모든 권리, 즉 지적재산을 소유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WIPO 설립조약 제2조2)에서는 지적재산권을 “① 문예·미술 및 학술저작물, ②실연가의 레코드 및 방송, 인간 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③과학적인 발견, ④의장(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감지될 수 있는 것), ⑤상표·서비스표시 및 상호, 기타 상업상의 표시로서 부정경쟁을 방지함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권리 또는 산업·학술·문예 및 미술 분야에 있어서의 지적활동으로 부터 생기는 권리”로 정의하며 그 대상범위는 광범위하다. 지적재산권은 “물권”, “채권”에 이은 제3의 재산권으로서 인공적인 권리이며 그 중요성은 21세기에 들어 매우 높아지고 있다.

2)이남훈(1993), pp.34-35.

<표 II -1> 지적재산권의 분류 및 관련법규

구 분		정의, 존속기간, 관련법규	
산업재산권	특허권 (특허법)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 것(대 발명) -존속기간 : 등록 후 출원인으로 20년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법)	-이미 발명한 것을 개량해서 보다 더 편리하고 유용하도록 물품의 고안 그 자체(소 발명) -존속기간 : 등록 후 출원인으로 부터 10년	
	의장권 (의장법)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를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로 부터 15년	
	상표권 (상표법)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 문자, 도형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과 색채와의 결합으로서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 -존속기간 : 등록일로 부터 10년(10년마다 갱신가능)	
지적재산권	저작권법	저작 인격권	-저작권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공표권, 이름표시권 및 동일성 유지권으로 구성 -저작자(개인·법인)에만 속하는 권리(일체 전속권)양도불가. 저작자 사후에도 일정의 보호
		저작 재산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등이 해당됨(양도가능) -보호기간 : 저작자 사후 50년 단, 법인저작물·영화·사진에 대하여는 공표 후 50년
		저작 인접권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등으로 구성 -존속기간 : 20년
	프로그램 저작권	-창의적인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물에 대해 보호되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저작자 사후 50년간	
	영업 비밀 보호권	영업비밀(trade secrete)은 개인 또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과 자원을 투입하여 개발·축적한 비밀정보(산업스파이, 부정경쟁, 영업비밀 침해)로 이익 침해시 민·형사적 구제가능(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신지적재산권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권	-관련법률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특허법제29조 -보호기간 : 10년
생명공학 기술권		-미생물 자체 및 이용 발명, 식물발명특허 : 특허법 적용 -식품품중보호 : 종자산업법	

지적재산권은 다시 지식재산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은 지식 그 자체로서 인정되는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영업비밀보호권 등이 해당되며, 산업재산권은 산업적 응용으로 인정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디자인 권), 상표권이 해당된다. 이와 같은 개념 하에 우리나라에서의 지적재산권을 분류하고 그 근거법 및 보호대상을 살펴보면 <표 II-1>과 같다³⁾.

특허권(patent rights)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유권과 유사한 개념이다. 발명(특허법 제2조)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즉 전자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기를 생각해 낸 것과 같은 경우를 발명이라고 한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 부터 20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특허관계법령으로는 특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특허등록령 및 시행규칙, 발명보호법 등이 있다.

실용신안권(utility model rights)은 송화기와 수화기가 분리되어 있던 것을 일체로 하여 편리하게 한 것과 같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을 의미하며, 실용신안법(제2조)상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며 실용신안권의 등록출원일로 부터 15년을 초과 할 수 없다. 이 권리는 실용신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실용신안 등록령 및 시행규칙 등의 관련법규에 따른다.

의장권(design rights)은 탁상전화기를 반구형이나 네모꼴로 한 것과 같이 물품의 외관에 대한 형상이나 모양 또는 색채에 관한 디자인을 의미한다. 의장법(제2조)상 의장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총칭하며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다. 관련법규로는 의장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의장등록령 및 시행규칙 등이 있다.

상표권(trademark rights)은 전화기제조회사가 자사제품의 신용을 유

3)최용규·박동준·김관조(2004), pp.23-24.

지하기 위하여 제품이나 포장 등에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상호, 마크 등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상표법(제2조)상 상표란 생산, 제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특별하고 현저한 것을 말한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며 10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상표권은 상표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상표 등록령 및 시행규칙등과 같은 법이 관련된다.

저작권은 모든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물은 창작물중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독창성을 인정할 수 있는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편집, 2차적 저작물⁴⁾등이 해당된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분류된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으며 저작재산권에는 경제적인 권리로서 소유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이며 어느 누구도 저작자의 승낙 없이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효력을 가진 권리를 말한다.

영업비밀보호권은 자기의 영업상의 지위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상호나 영업표시를 사용하거나 다른 회사가 힘들게 쌓아 올린 영업상의 신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함으로써 다른 회사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보호해야 할 권리를 말한다⁵⁾.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 설계권은 반도체 재료 또는 절연재료의 표면이나 반도체 재료의 내부에 능동소자를 포함한 두개이상의 회로소자와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導線)이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동시에 형성되어

4) 2차적 저작물은 원 저작물을 번역·편곡, 변형, 각색·영상제작,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5) 국내 중소 및 벤처기업의 산업스파이 적발건수 및 예방액을 보면 엄청난 규모이다. 연도별 적발건수와 예방액을 보면, 2003년 2건 1,000억원, 2004년 18건 9조 1,120억원, 2005년 20건 5조 5,000억원, 2006.7월 현재 4건 3,906억원에 이르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2006.8.02.

전자회로의 기능을 가지도록 제조된 제품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권을 말한다. 이의 권리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 부터 10년간이다.

2. 지적재산권 리스크의 특성

가. 지적재산권 리스크의 분류

21세기에는 새로운 지식에 의하여 부가 형성되고 부가 이전한다고 한다. 이러한 부 형성의 원동력은 지적재산이다. 이에 따라 산업화 국가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새로운 지식재산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확보된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최적화하는 경향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고액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관련한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다.

지적재산권리스크(Intellectual Property Right Risk)는 기업 등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받든지 또는 다른 주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법률비용, 배상액 부담 등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세분하여 보면, 기업이나 경제주체가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상에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는 크게 “불특정 제3자와 관련된 리스크”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자신과 관련된 리스크”로 구분된다. 제3자 관련 리스크는 기업 활동을 하면서 다른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리스크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방어적 포지션을 취하는 특성이 있다. 당사자 관련리스크는 자신의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경쟁기업 등 다른 기업이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향후 예상되는 수익을 상실하

는 리스크로 침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기 위한 공격적인 포지션에 해당된다.

<표 II-2> 지적재산권 관련 리스크 유형

구 분	제3자 관련 리스크	당사자 관련 리스크
리스크 발생	자신이 다른 기업 등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경쟁기업 등 제3자가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리스크 결과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발생	자신의 기대수익 상실 가능성 발생
리스크 대처 포지션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로부터 방어하는 포지션	제3자로부터 회수하기 위한 공격적 대처 포지션

자료 : Zaneta Jaunzeme(2005)에서 요약 정리하였음.

나. 지적재산권 리스크의 법적 구제방법

지적재산권 리스크에 대해 법적보호제도는 다른 일반적인 배상책임 리스크와 다른 절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형사소송부터 특허심판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표 II-3> 참조).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지적재산권 형사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특허소송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법원은 1994년 7월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서울특별시를 소재지로 하고 전국을 관할로 하는 고등법원 수준으로 1998년 3월에 설립되었다. 특허법원이 관장하는 업무는 특허법 제186조 제1항, 구 실용신안법 제35조(현행 실용신안법 제56조), 의장법 제75조, 상표법 제86조 제2항이 정하는 제1심 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그리고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은 대법원에서 심판하도록 하였으며 특허·실용신안·의장에 관한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기술심리관 제도를 도입하였다.⁶⁾ 이에 따

라 특허법원의 태동과 더불어 특허분쟁 처리가 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표 II-3> 지적재산권 침해시 법적 보호수단

구 분	법적 보호수단
1. 지적재산권 형사소송	1. 고소와 고발 2. 검사기소
2 지적재산권 일반 행정소송	1. 취소소송 2. 무효 등 확인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 지적재산권 민사소송	1. 침해금지 청구소송 2. 손해배상청구소송 3. 신용회복청구 소송 4.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5. 손실보상청구 소송
4. 특허소송	1. 심결청구 소송 2. 상고 3. 보상금 및 대가소송
5. 특허심판	1. 거절결정불복 심판 2. 특허취소결정불복 심판 3. 특허무효심판 4.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무효소심판 5. 권리범위확인 심판 6. 정정심판 7. 정정무효심판 8. 통상실시권허여(許與) 심판

자료 : 최용규·박동준·김관조(2004), pp.23-24.

이와 같은 특허법원의 신설배정에 기초하여 볼 때 우리나라에서 ‘특허소송’이라 함은 넓게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에 관한 소송 전부, 즉 법원조직법 상 특허법원의 관할로 되어 있는 ① 특허법 제186조 1항, 실용신안법 제55조, 의장법 제75조, 상표법 제86조 2항이 정하는 1심 사건(법원조직법 28조의4 제1호)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법원조직법 28조의 4 제2호)에 관한 소송

6) 자세한 사항은 특허법원 홈페이지 참조(http://patent.scourt.go.kr/patent/intro/intro_02/index.html).

7) 조영선, “미국의 특허소송절차에 대한 고찰 -법관의 기술이해를 중심으로-”, 특허청 홈페이지 정보광장 연구회자료, 2005.05.04(<http://patent.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

뿐만 아니라, ② 특허청이 한 행정상의 처분에 대한 소송, ③ 특허권의 귀속을 둘러싼 소송, 그리고 특허 침해소송이라고 불리며 일반 법원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④ 특허법 제126조의 금지청구소송, ⑤ 특허법 제128조,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이를 본안으로 하는 보전소송, ⑥ 특허법 제131조의 신용회복 조치청구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 중 ①을 ‘좁은 의미의 특허소송’ 혹은 ‘심결 취소소송’이라고 한다. 지적재산권 관련한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 먼저 우선 소장을 직접 작성하거나 변호사나 변리사 등에 의뢰하여 작성하여 특허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특허소송의 제소는 특허심판원·품종보호위원회의 심결문·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8) 국내 특허소송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 소송안내 참조(http://patent.scourt.go.kr/patent/sosong/sosong_03/sosong_03_01/index.html)

III. 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와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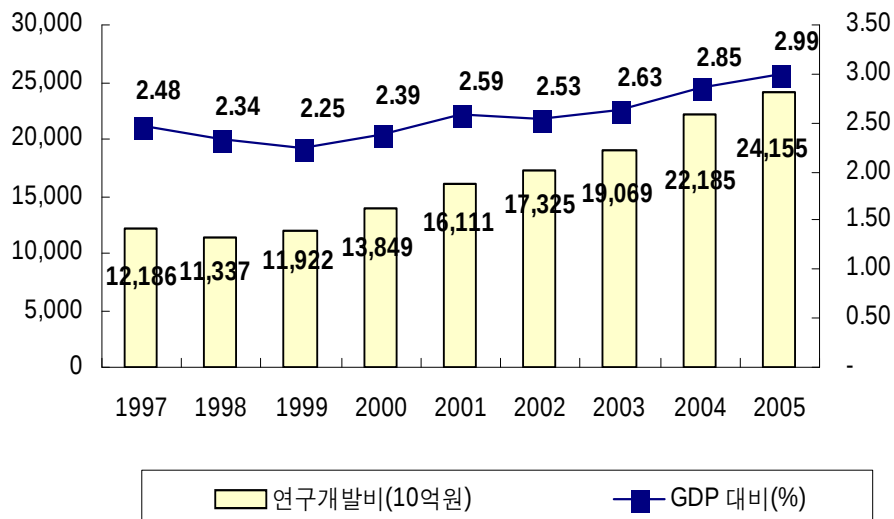
1. 지적재산권 리스크 발생현황⁹⁾

가. 국내 리스크

1) 심판청구 현황

지식재산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등장함에 따라 첨단기술 선점을 위한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2005년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24조 1,554억원으로 전년대비 8.9% 증가하였고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중은 2.99%로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¹⁰⁾

<그림 III-1> 한국의 GDP대비 R&D투자비율 추이



9) 본 보고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출원 및 보유현황 등 관련통계는 특허청의

『2006 지식재산백서』에 수록된 내용을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10) 2005년 대비 R&D 투자 증가율(8.9%)이 국내총생산 증가율(3.5%) 보다 2배 이상 증가

<표 III-1> R&D 투자와 출원 • 심사 • 심판청구 현황

(단위 : 천억원, 건,%)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년 증감율
GDP	4,841	5,294	5,786	6,221	6,842	7,246	7,793	8,066	3.5
연구개발비	113	119	138	161	173	191	222	242	8.9
출원 건수	특 허	75,188	80,642	102,010	104,612	106,136	118,652	140,115	12.1
	실 용	28,896	30,650	37,163	40,804	39,193	40,825	36,945	-2.1
	소 계	104,084	111,292	139,173	145,416	145,329	159,477	176,868	9.1
	디자인	25,155	32,404	33,841	36,867	37,587	37,607	41,184	9.2
	상 표	74,214	117,285	110,073	107,137	107,876	108,917	115,014	5.6
	소 계	99,369	149,689	143,914	144,004	145,463	146,524	149,648	5.9
	계	203,453	260,981	283,087	289,420	290,792	306,001	326,516	8.4
심사 건수	특 허	86,364	86,978	68,338	55,766	79,414	93,433	99,826	32.9
	실 용	58,619	57,722	68,779	54,550	49,307	48,578	53,389	-7.6
	소 계	144,983	144,700	137,117	110,316	128,721	142,011	153,215	18.8
	디자인	31,176	26,324	27,540	32,276	38,631	40,094	40,541	0.7
	상 표	117,432	72,908	83,358	87,078	100,020	118,796	116,210	7.5
	소 계	148,608	99,232	110,898	119,354	138,651	158,890	156,751	5.7
	계	293,591	243,932	248,015	229,670	267,372	300,901	309,966	12.2
심판 청구	특 허	2,277	3,298	1,994	3,004	3,376	3,821	4,798	48.8
	실 용	758	783	591	904	887	788	827	-5.0
	소 계	3,035	4,081	2,585	3,908	4,263	4,609	5,625	40.9
	디자인	584	629	508	526	559	594	480	-11.8
	상 표	2,762	2,703	2,403	2,594	2,907	3,195	3,498	24.2
	소 계	3,346	3,332	2,911	3,120	3,466	3,789	4,042	19.3
	계	6,381	7,413	5,496	7,028	7,729	8,398	12,751	31.9

이와 더불어 지적재산권 분쟁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연구 개발비가 24조 1,554억원으로 1998년 대비 114% 늘어났는데, 심판청구 건수는 2005년 12,751건으로 1998년 대비 99.8%가 증가했다. 특히, 연구 개발비 투자와 직접 관련되는 특허와 실용신안 분야 심판청구건수는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부 보도 자료, 2006. 8. 17(www.most.go.kr)..

2005년 7,927건으로 1998년 대비 161%로 대폭 증가하였다. R&D 투자의 증가와 더불어 심판청구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주체별 R&D 투자와 심판청구의 관계를 보면, 먼저 각 연구주체별 연구개발비는 2005년의 경우 기업이 18.6조원으로 전년대비 9.1%, 공공연구기관이 3.2조원으로 전년대비 7.7%, 대학이 2.4조원으로 전년대비 9.0% 증가하였고, 전체 연구개발비 투자액에서 각 연구주체의 연구개발비 점유율은 기업이 76.9%, 공공연구기관이 13.2%, 대학이 9.9%로 나타났다. 그리고 심판청구건수는 2005년의 경우 기업이 5,763건으로 전년대비 27.2%, 공공연구기관이 134건으로 전년대비 55.8%, 대학이 98건으로 전년대비 66.1% 증가하였고, 전체 심판청구건수 중 각 연구 주체별 점유율을 보면 기업이 96.1%, 공공연구기관이 2.2%, 대학이 1.6%를 보이고 있다. 연구주체의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출원건수와 심판청구건수와도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2> 연구주체별 R&D투자와 심판청구 현황

(단위 : 10억원, 건)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연구개발비	11,337	11,922	13,849	16,111	17,325	19,069	22,185	24,155
-공공연구기관	2,100	1,979	2,032	2,160	2,553	2,626	2,964	3,193
-대 학	1,265	1,432	1,562	1,677	1,797	1,933	2,201	2,398
-기 업	7,972	8,511	10,255	12,274	12,975	14,510	17,020	18,564
심판청구건수	2,262	2,638	2,201	3,088	3,425	3,929	4,677	5,995
-공공연구기관	54	58	41	77	50	67	86	134
-대 학	2	18	12	25	22	36	59	98
-기 업	2,206	2,562	2,148	2,986	3,353	3,826	4,532	5,763

특허법원 개원(1998년 3월 1일)이후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 소송제기건수는 연평균 847건으로 소제기율이 연평균 22.3%에 이르고 있으며, 2005년에는 19.3%로 연평균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소제기율이 감소한 것은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전반적 수용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표 III-3>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단위 : 건,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심판원심결	7,820	7,279	6,079	5,995	6,890	7,120	8,877	11,904
소제기 가능 심결	3,559	3,823	3,204	3,069	3,293	3,605	4,580	5,754
소 제 기	685	995	797	726	840	747	873	1,111
제소율	19.2	26.0	24.9	23.7	25.5	20.7	19.1	19.3
판결건수	662	911	791	796	776	752	855	938
취소판결	176	235	188	217	236	206	219	246
취소율	26.6	25.8	23.8	27.3	30.4	27.4	25.6	26.2

2)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비율은 2005년 39.0%로 전년도 42.4%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고 최근에 들어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05년 상고건수가 다소 감소한 것은 과거의 소송결과를 학습한 분쟁당사자들이 최종판결 이전에 상호 공동이용(cross-licensing) 등으로 타협과 공존을 모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고심에서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한 비율은 2005년 14.9%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고건수의 감소 이유와

표리관계에 있는 것으로, 승소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일방당사자가 타협을 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표 III-4>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단위 : 건,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특허법원 판결		662	911	791	796	776	752	855	938
상 고	건 수	311	316	393	355	308	300	363	366
	상고율	47.0	34.7	50.0	44.6	39.7	39.9	42.4	39.0
대법원 선고		283	241	365	461	368	283	383	303
파 기	건 수	35	24	27	66	61	32	41	45
	파기율	12.4	10.0	7.4	14.3	16.6	11.3	10.7	14.9

3) 침해사범 처리현황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침해사범의 처리현황을 보면, 각 지적재산권 별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2004년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 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371건이 침해건수로 접수되었고 이중 실행은 6건이 선고받아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상표를 침해한 건수는 984건으로 이중 65건이 실행을 선고받았다. 특허를 침해한 건수는 27건을 접수받아 이중 실행건수는 없어 다른 지적재산권하고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III-5> 국내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권리별 처리현황

년도	위반법명	금년접수	계	실행	징유예	벌금	선고유예	무죄	형의제	면소	공소각	선판치	기타	항소
2002	상표법	984	940	107	540	231	22	12	-	-	4	4	20	-
	음반및비디오물에 관한법률	1,374	1,411	145	631	521	27	6	-	4	6	5	66	-
	의장법	58	52	6	16	21	-	3	-	-	4	-	2	-
	저작권법	269	257	36	60	70	-	9	-	-	51	6	25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107	111	3	28	26	1	-	-	-	26	8	19	-
	특허법	93	43	12	9	8	1	5	-	-	6	-	2	-
	합 계	3,075	3,011	363	1,327	946	52	45	-	4	108	23	143	-
200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182	175	39	24	82	2	9	-	-	18	-	1	-
	상표법	940	1,046	59	669	275	9	5	-	-	2	2	25	-
	음반및비디오물에 관한법률	1,268	1,204	89	480	510	23	7	-	4	2	1	88	-
	의장법	50	47	3	9	12	-	7	-	-	9	-	7	-
	저작권법	148	145	4	20	44	2	12	-	-	38	4	21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107	117	8	9	44	1	-	-	-	26	3	26	-
	특허법	38	35	12	3	8	-	5	-	-	5	-	2	-
	합 계	2,733	2,769	214	1,214	975	37	45	-	4	100	10	170	-
200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371	101	6	27	42	3	11	-	-	9	-	3	-
	상표법	984	955	65	549	286	12	13	-	-	1	-	29	-
	음반및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1,447	1,473	53	338	939	32	13	-	1	1	-	96	-
	의장법	27	34	1	4	10	-	2	-	-	11	-	6	-
	저작권법	192	147	1	18	75	5	3	-	-	25	-	20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642	521	-	30	46	-	1	-	-	284	-	160	-
	특허법	27	28	-	6	7	-	2	-	-	10	-	3	-
	합 계	3,690	3,259	126	972	1,405	52	45	-	1	341	-	317	-

자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06), p.20.

나. 해외 리스크

1) 국내기업의 외국 기업으로부터 침해현황

최근 6년간(2000-2005) 특허청의 실태조사에 의해 파악된 해외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받은 우리기업은 166개 기업으로 총 209건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여, 피침해 기업은 연평균 17.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기업의 피침해 사례를 침해발생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 등 아시아지역이 전체 침해건수의 50.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들 국가에서 제조된 모조품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으로 수출되어 유통되는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표 III-6> 연도별·지역별 피침해 현황

(단위 : 기업 수)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아시아	중국	-	11	8	6	5	18	48
	중화권	1	-	2	2	1	1	7
	아시아권	5	1	6	7	4	5	28
아프리카권		1	-	3	8	4	2	18
유럽권		4	4	6	11	3	2	30
북미·오세아니아		-	-	4	4	5	5	18
중남미		1	-	2	-	2	1	6
기타		3	1	-	4	3	-	11
합 계		15	17	31	42	27	34	166

주: 중화권은 대만, 홍콩, 마카오를 포함하며, 아시아권은 중국 및 중화권을 제외한 기타 아시아 국가이며, 침해발생국가 기준임.

그리고 166개 기업의 피침해 사례를 권리별로 살펴보면, 이중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절반 이상(52.6%)을 차지하고 있어 상표는 도용이 용이한 반면, 이에 대한 보호·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III-7> 지적재산권 권리별 피침해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특허·실용	6	5	13	18	6	10	58
디자인	3	4	5	1	2	10	25
상 표	7	11	23	29	18	22	110
기 타	-	1	1	2	3	9	16
계	16	21	42	50	29	51	209

또한, 특허청이 2005년 해외 소재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침해 실태조사에 의하면, 침해유형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 (37건)가 모조품과 관련된 것으로 응답하여 해당국의 지적재산권 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침해발생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9.0%(24건)가 산업재산권 관리 소홀 및 해당국의 지적재산권 정보부족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침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II-8> 해외로부터 지적재산권 침해 유형 (2005)

(단위 : 건)

침해 발생 유형	내 용	등록지적재산 권을 모방한 모조품 유통	미등록 지적재산 권의 무단사용 또는 모조품 유통	모조품 수출입		현지인의 산업재산 권 무단 선 등록	기타(상표 등록 방해)
	건수	17	13	7		5	1
침해 발생 원인	내 용	현지에서 국내 지식재산 의 유명성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소홀	해당국가 산업재산권 제도 등에 대한 정보부족	현지인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과 법·제도의 미비	침해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 등 산업재산권 보호·관리 소홀	기타(상표 등록에 장기간 소요)
	건수	14	9	9	9	6	2

위의 통계에서 보듯이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적재산권 피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그 동안 우리의 기술수준이 꾸준히 향상

됨에 따라 우리기업과 상품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가 높아진 결과라 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우리기업의 인식도 아직은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2) 외국기업과 특허분쟁 현황

기술 선진국들은 GATT체제의 다자간 협상형태로서 UR/TRIPs(위조 상품교역을 포함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등을 통해 자국의 지적재산권의 보호규제를 강화 확대하여 왔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획득했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을 앞서 지휘하여 국제적 틀을 갖춘 선진국 기업들로부터 국내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에 휘말리거나, 중국 등 우 개도국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무분별하게 도용하는 등의 침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와 같은 국제 특허분쟁 사례는 <표 III-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6년부터 '06년 7월 현재까지 발생한 우리 나라와 관련된 주요 국제 특허분쟁은 58건에 이르며, 주로 전기·전자분야(47건)에서 발생하였고, 나머지는 화학·의약품 분야(11건)이었다. 국제 특허분쟁은 외국기업으로부터의 공세로 인한 분쟁(57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분쟁을 일으킨 외국기업의 소속 국가별로는 미국(35건), 일본(13건), 이탈리아(3건), 대만(2건), 캐나다(2건), 독일(1건), 스위스(1건) 순이었다.

국내기업의 대부분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능력이 취약하였으며, 일부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분쟁대처능력이 미약하였다. 분쟁방식도 “선협상 후소송 방식”에서 “선소송 후협상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제조중단 가처분소송 등 공격적인 방식

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는 국내외 시장에서 특허침해사건 연루시 취할 수 있는 여러 전략을 수립하고, 특허청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단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표 III-9> 외국기업과의 기술분야별 특허분쟁 건수 ('00년~'06년)

분 야		'00	'01	'02	'03	'04	'05	'06.7	소계	총계
전기 전자	PDP	-	-	-	-	2	1(1)	-	3(1)	47
	LCD	-	-	1(1)	1	3	-	-	5(1)	
	반도체	1	1	1	1	2	6(1)	2(1)	14(2)	
	휴대폰	-	-	-	-	1	3	1	5	
	DMB	-	-	-	-	4	-	-	4	
	컴퓨터	10(10)	2(2)	-	-	-	-	-	12(12)	
	기타	-	1	-	2	1(1)	-	-	4(1)	
화학 약품	약품	1	1	1	1	3	-	-	7	9
	섬유	-	1	-	-	-	-	-	1	
	식품	-	1	-	-	-	-	-	1	
기계	자동차	-	-	-	-	-	-	1	1	2
	정밀가공	-	-	-	-	-	-	1	1	
합 계		12(10)	7(2)	3(1)	5	16(1)	10(2)	5(1)	58(17)	58

주: 1) 국내외 법원 및 미 ITC(국제무역위원회) 제소 건수 (분쟁 발생연도 기준)

2) 제소기관 및 피소 업체 당 1건

3) ()는 한국기업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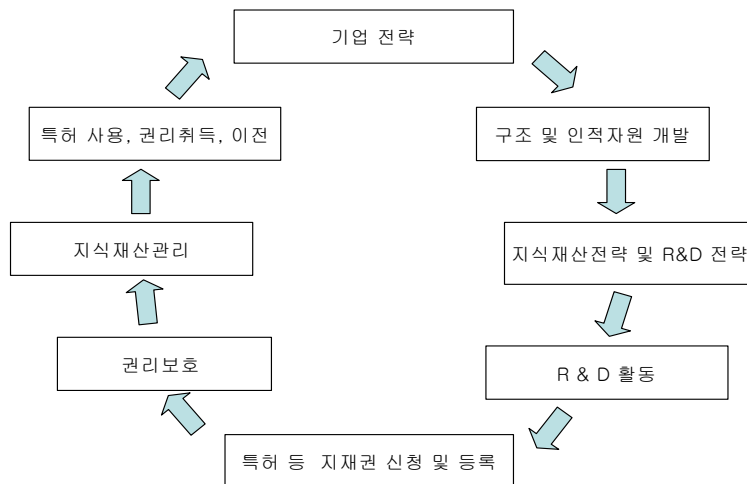
자료 : 특허청 홈페이지 통계자료(<http://www.kipo.go.kr/kpo2/user.tdf>).

2. 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 필요성

21세기 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모델을 확보하지 않으면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어 버린 현재의 글로벌 마켓에서 생존하기 곤란하다. 또한 생존하더라도 경쟁기업과 생산성이나 수익성 등 주요성과에 있어 낙후돼 계속적 기업으로 성장을 약속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의 화두는 지식경영을 통한 새로운 부 창출능력이다. 이러한 부의 원

천인 지적재산권을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에서부터 지식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이상적인 관리 싸이클을 보면 다음 <그림 III-2>와 같다.

<그림 III-2> 지식재산 및 R&D 관리 싸이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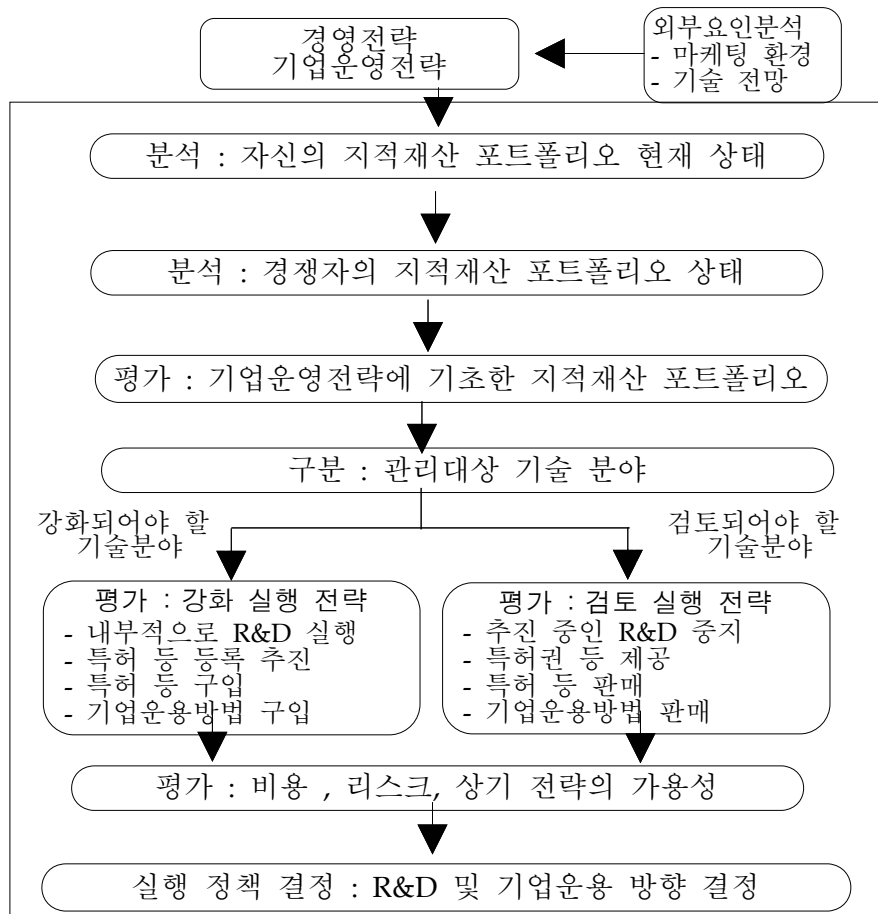
자료 : Masayuki MIYAKE • Yuji MUNE • Keiichi HIMENO(2004),p.3.

먼저 기업은 R&D 활동을 위한 장기적 전략을 세우고 주요 주제 설정 및 자금여력을 분석하여 회사의 기업전략을 수립한다.

두 번째로는 지식재산을 만들기 위한 사전단계로 발명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고, 연구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및 기술경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식재산관리부서의 역할과 구조를 개발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지적재산권 전략과 R&D 전략을 연결하여 연구 분야를 결정한 뒤 최적의 지적재산을 만들 수 있는 전략을 세워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다음에서는 성과물인 지적재산권의 등록신청절차를 진행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가입 등의 수단을 강구한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축 및 지적

재산권의 내부 사용권한 한정 등의 지식재산권 관리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생산 활동에 지식재산권을 이용 또는 다른 기업으로 지식재산권 이전 등을 통해 부 창출을 한다.

위에서 살펴본 이상적인 지식재산 및 R & D 이상적 관리 사이클에서 중요한 부분은 많은 연구비를 투자하여 얻어진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반적인 지식재산관리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III-3>과 같다.



자료: Masayuki MIYAKE • Yuji MUNE • Keiichi HIMENO(2004)

지식재산관리의 첫 번째 단계는 기업의 경영전략에 따라 각 사업부

문별로 산재해 있는 지식재산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인된 지식 재산은 기술포트폴리오로 취급하고 각 사업 분야에 채택해야 할지를 평가한다. 다음 단계는 경쟁 기업의 지식재산 포트폴리오의 경향을 분석하여 유사한 상품에 대한 마케팅 목적에 따라 기술개발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한다.

다음은 기업의 경영전략에 맞추어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평가하고 향후 강화해야 할 기술 분야와 검토되어야 할 기술 분야를 구분한다. 강화되어야 할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R&D를 추진하여 지적재산권에 대한 허가를 취득하거나 다른 기업의 특허 등을 구입하는 등의 적절한 대안을 평가한다. 또한 검토되어야 할 기술에 대해서는 R&D를 중지하고 지적재산권을 다른 기업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대안을 평가한다. 이러한 과정에 완성된 후에는 각 대안별로 비용과 리스크를 평가하여 최적의 기업전략에 맞는 정책을 결정하여 실행한다.

3. 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 방법

기업이 정상적인 생산, 마케팅 등 경영활동을 하면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침해를 당하여 수익상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침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보강하거나 침해소송을 위한 비용 지출도 수반하게 되는 등 많은 리스크가 존재한다. 먼저 지적재산권별로 침해의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허의 경우 기업이 제품을 만들거나, 사용, 판매 또는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업 등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상표권은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와 유사하게 사용할 때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저작권은 저작권 소유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복제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전예방에서부터 비용지출이나 손

실 발생에 대비한 재무적 수단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출된 리스크 규모를 측정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의 첫 번째 단계는 지적재산권 관련 리스크를 야기하는 익스포저(Exposure)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지적재산권 리스크의 익스포저(IP Risk Quadrants)를 나타낸 것이 다음 <표III-10>이다.

<표 III-10> 지적재산권 관련 리스크발생 손인(Peril)

구 분	소송비용	가치영향(Impact)
지적재산권 소유자와 관련된 리스크(1st Party : 원고)	1. 지적재산권 보강 비용	2. 기업의 가치 손실이나 산업에서 위상 상실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제3자 관련 리스크(3rd Party : 피고)	3. 방어비용 발생	4. 제3자에 대한 손해 야기
5. Title(권리보장리스크)	지적재산권 유지 및 방어 비용	권리의 지분감소 또는 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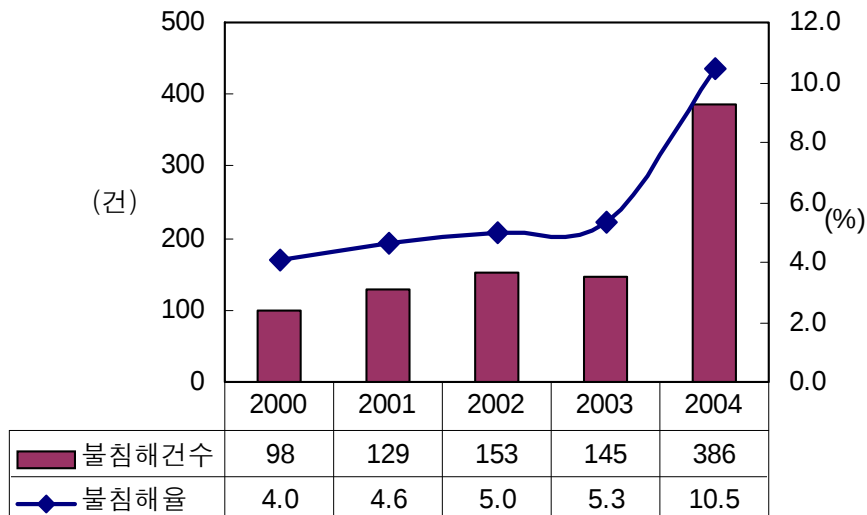
자료 : Kimberly K. Cauthorn(2004)에서 요약한 것임

첫 번째 익스포저인 지적재산권 보강비용(enforcement cost)은 기업이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소송비용에 추가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의 집행에 수반하는 비용이 포함된다(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expense). 만일 상표권 소유자가 침해된 경우 적극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상표권 가치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상표권 자체가 상실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자신의 지적재산권의 권리를 보호 및 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매우 막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지적재산권 소송비용은 아주 조그만 한 저작권 침해 소송비용 25만 달러에서부터 상고심 비용 4백만 달러까지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지적재산권 분쟁이 있는 기업에게 재무적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

히 해당기업이 경기가 최악인 경우에 이러한 지적재산권 소송에 걸려 있다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III-4> 지적재산권 불침해 판결건수 추이



자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06), p.21.에서 재구성하여 작성한 것임(불침해건수는 무죄, 면소, 공소기각을 합한 것임)

우리나라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된 경우를 보면 2000년에 당해연도 침해건수 대비 4.0%였으나 2004년에는 10.5%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관련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지적재산개발활동과 관련된 리스크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발생한 소송비용이나 배상액 등 손해를 부담하는 것이다(intellectual property loss). 즉 기업이 지적재산권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게 되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매출손실이 생기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수

업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기업의 가치도 감소시키는 2차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의 L건강회사를 들 수 있다. 1991년부터 기저귀를 생산해 온 L건강회사는 매년 1, 2개의 기저귀 신제품을 내놓다가 2001년부터 신제품이 뚝 끊겼고 2005년 11월 말까지 5년 동안 단 1개의 신제품만 내놓았다. 이 회사가 이렇게 된 것은 국제특허분쟁 때문이다. 미국 킴벌리클라크 등은 2001년 7월 L건강회사가 기저귀 특허를 침해했다며 국내 법원에 59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L건강회사는 특허분쟁 대상이 '샘 방지용 날개'라는 기술적인 부문이어서 개발연구 인력을 소송문제에 투입하는 바람에 신제품을 거의 내놓지 못했다. L건강회사는 2005년 11월 23일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소송비용 50억원을 지출하였고 기저귀 사업 매출액도 2000년 488억원에서 2004년 366억원으로 줄어들어 경영지표는 매우 악화되었다.¹¹⁾

세 번째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하면서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한 법률방어비용(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legal expenses)이 발생한다. 네 번째는 기업 등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보유한 기업 등 제3자에게 보상해야 하는 비용(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Damages)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 들어 특허 침해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관리해야 할 리스크 중의 하나이다. 다섯 번째로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권리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방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공동으로 발명을 하여 그 권리를 사용하는 경우에 빈번히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소송의 배상청구금액이 매우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intellectual property ownership issues).

11) 『동아일보』 2005.12.14,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표 III-11> 지적재산권 침해관련 법규 현황

구분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반도체직접회로배치설계에 관한법률
관련 법률	-제2조(정의) 6호 -제66조(침해로보는행위) -제68조(고의의 추정) -제93조(침해죄) -제97조(양벌 규정)	-제2조(정의)1호 -제18조(벌칙) -제19조(양벌 규정)	-제2조(정의)1호 -제92조(침해로보는행위) -제99조(부정발행등의죄) -제101조(몰수) -제102조(고소) -제103조(양벌규정)	-제2조(정의)3호 -제127조(침해로보는행위) -제225조(침해죄등) -제230조(양벌규정) -제231조(몰수 등)	-제2조(정의)3호 -제30조(침해로보는행위) -제48조(침해죄등) -제53조(양벌규정) -제54조(몰수 등)	-제2조(정의) -제63조(침해로보는행위) -제82조(침해죄) -제87조(양벌 규정)	-제2조(정의)1호 -제26조(침해로보는행위) -제34조(벌칙) -제36조(고소)	-제2조(정의) 1호,2호,4호 -제8조(배치설계권의 효력) -제11조(전용 이용권) -제45조(침해죄등) -제49조(양벌 규정)

주 : 조문별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률 참조

자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06), p.22.

위에서 언급한 익스포저를 지적재산권관련 리스크로 구분하여 보면 “익스포저 1과 2”는 지적재산권 소유와 관련된 리스크에 해당하며 “익스포저 3과 4”는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리스크이고 “익스포저 5”는 지적재산권 소유 분쟁과 관련한 리스크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익스포저 3과 4”에 해당하는 법규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허 등 지적재산권 관련법과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비(非)지적재산권 법률¹²⁾로 구분된다. 지적재산

12) 관세법 제235조(지적재산권 보호)에서는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보류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 원칙외에 관세법상의 처벌규정은 없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호는 ‘97년 이후 수출입통관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침해사범에 대한 수사권이 세관직원에게 부여되어 있어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등의 범죄조항에 해당하는 불법수출입

권과 관련된 해당법률에서 침해와 관련된 법규 조항을 정리하면 다음 <표 III-11>과 같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파악한 뒤 사업 추진전략을 세워야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익스포저와 리스크를 파악한 뒤에는 관리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리스크관리의 전략은 리스크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prevention strategy)과 리스크가 발생한 경우 소송비용 부담, 배상액 부담 등과 관련된 재무적 대책으로 보험가입 등 전략(financial strategy)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재무적인 대책으로는 사전적으로 예상손해를 감안하여 매년 적절한 수준의 기금을 적립하는 방법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또 다른 재무대책으로는 기금적립보다는 조금 더 과학적인 방법인 자가보험(self insurance)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기업 내에서 보험의 형태를 빌어 운영하는 방법이므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할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의 재무대책은 민영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지적재산권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지적재산권 보험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지만 미국과 일본, 유럽국가에서는 보험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음 <표 III-12>는 주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스크 익스포저별 보험회사를 열거하였다.

행위에 대한 입건 및 조사가 가능하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06), pp.21-22.

<표 III-12> 지적재산권 관련 보험전가 시장 현황

담보 구분(익스포저)	영위 보험회사	기타 대책
1.자기기업의 법 집행비용 (1st Party IP Exposure)	IPISC, Ambridge, The Hartford	컨틴전시 비용 IP 지주회사 투자자, 캡티브
2.자기기업의 가치/수익/ 위상 손실(1st Party)	Kiln(로이드), IPISC Swiss Re	
3.제3자침해시 방어비용 4.제3자에 침해 손해	AIG, Chubb, Venture Program (로이드), IPISC, Swiss Re, Certain 로이드신디케이트, Allianz, Quanta	캡티브 자가보험(준비금) 보상조항
4.제3자에 침해방어비용/ 침해손해 한도 담보	AIG, The Hartford, Ambridge, 로이드	에스크로우 신용장
5.지적재산권 소유권 분쟁 (자신 권리, 제3자 배상)	Chubb, 로이드	캡티브 자가보험(준비금), 에스크로우

자료 : Kimberly K. Cauthorn(2004), p.16.

위에서는 기업경영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확인하고 그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 등 대책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리스크관리를 통해 기업이 안정적인 이익을 내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식기반 경제를 속히 인식하고 이에 맞는 지식경영체제로 변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

국내 기업들의 경우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지식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지적재산권 관련한 리스크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행조직을 설치하고 지식경영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의 현실은 미국 등 기술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4년 11월 전국 경제인연합회에서 특히 다출원 기업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48.9%기업만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대기업은 61.2%를 설치했으나 중소기업은 39%만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 큰 차이가 있었다. 또한 특허청, 산업자원부, 노동부가 공동으로 2004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체 1만개사업체를 추출하여 2,053개 업체가 응답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18.8%만 응답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식재산연구센터가 2004년 6월에 코스닥에 등록된 중소기업 878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230개 업체가 응답한 결과에서는 19.4%만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 전경련의 조사보다는 조금 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업의 지적재산권의 관리야말로 21세기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핵심요소라는 것으로 재인식하고 전담인력과 조직운용 등 지식재산 리스크 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표 III-13> 지적재산권 관리 전담 조직 운영현황

조사연도	1999	2001	2001	2003	2004	2004	2004
조사기관	발명진흥회	발명진흥회	한국산업기술재단	발명진흥회	전경련	특허청 노동부 등	지식재산 연구센터
전담조직 설치율	50%	24%	29.5%	56.9%	48.9%	18.8%	19.4%

자료 : 권재열·임구영(2004), p.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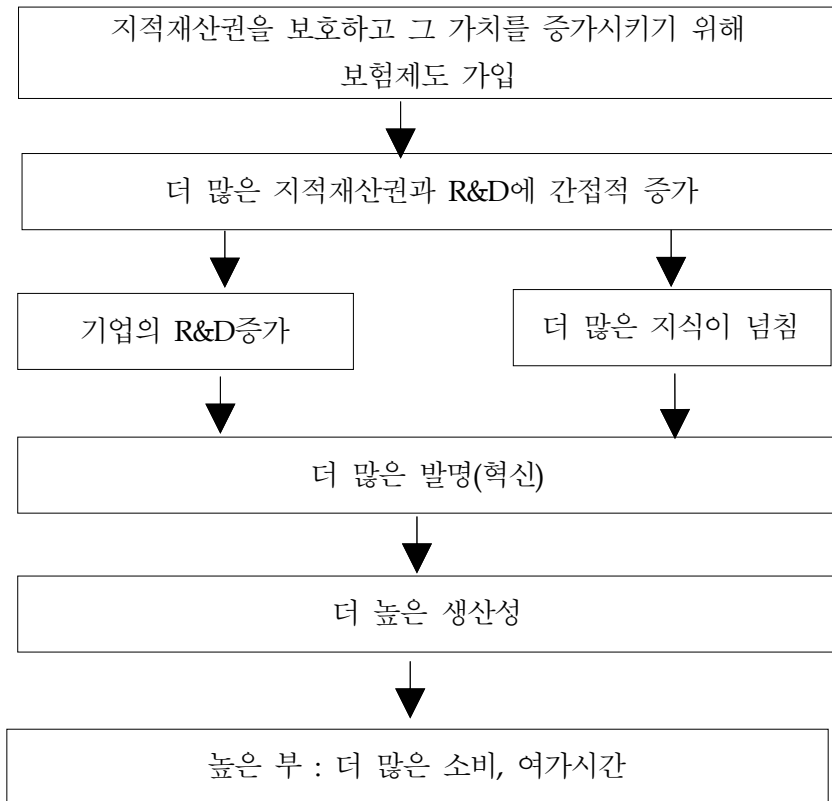
4. 리스크관리에서 보험 효과

기업이 지적재산권의 리스크관리를 위해 보험제도로 관련 리스크를 전가하게 되면 기업에게는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지적재산권이 확보되며, 예기하지 못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금전적 손실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부가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험상품을 통한 리스크관리가 기업의 부를 어떻게 창출 되는 가를 나타낸 것이 다음 <그림 III-5>이다.

<그림 III-5 지식재산 리스크 보험을 활용한 부의 창출>



주 : Danish Patent Office(2001), p.43.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리스크관리가 최적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기업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계속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으나 이를 게을리 한 기업은 예상하지 못한 손해 부담과 기업의 평판리스크(occupational risk)도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컴퓨터업을 영위하는 IBM은 1990

년대부터 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성과로 연평균 3000개 이상의 특허를 미국에서 등록하고 있고 이들 지적재산권의 해외 판매나 기술로열티 수익은 순이익의 5%나 된다. 생화학을 주 업종으로 영위하는 Amgen의 지적재산권의 수익은 연간 순수익의 17%로 매우 높다. 즉 신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지적재산에 기반한 수익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일본기업들의 경우에도 기술 로열티 수익이 연간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소니와 캐논은 매년 290억엔, 200억엔의 특허기술 로열티 수익을 올리고 있고, NEC도 100억엔을 올리고 있다. 유럽에서는 Thomson사가 1999년 2억 7,800만 유로에서 2003년 4억 6,200만 유로의 기술로열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기업의 지적재산권은 기업경영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계속 성장의 동력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III-14> 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로열티 수익 현황

(단위 : 백만US달러, %)

회사	영위업	2000	2001	2002	2003	2004	순이익비중
DuPont	화학	155	160	128	141	151	8.0
Merck	제약	153	126	75	87	114	2.0
Amgen	생화학	181	253	332	383	N.A	17.0
IBM	컴퓨터	528	465	351	338	393	5.0

자료 : Shingeki • Kamiyama • Terry Sheehan(2006), pp.11-12.

IV. 주요국의 지적재산권 보험 운영현황

1. 미국

가. 보험운영 형태

미국 특허상표청(USPTO: The Department of Commerce's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은 1999년에 산업재산권, 저작권을 포함하는 지식재산 정책을 주도하여, 국내·외적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통상정책에 대해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80년 이후 정부 R&D 성과인 지식재산의 기술이전 관리를 강화하는 바이돌법(Bayh-Dole)과 스티븐슨-와이들러 기술혁신법(Stevenson-Wydler Innovation Act)¹³⁾을 제정하였으며, 2005년에는 “21세기 발전계획”에 의하여 지식재산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이와 같이 안으로는 “21세기 전략계획”에 기초한 특허행정시스템의 혁신을 추구하는 한편, 해외에서의 불법복제 방지를 통한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04. 10월, 법무부, 세관, 국토방위청, 특허청 등 지적재산권 관련 정부조직들을 망라하여 「STOP (Strategic Targeting Organized Piracy) 프로젝트」를 관련 기관이 공동 대응해가면서 추진해가고 있다. 기업측면에서도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침해를 받든 또는 침해했다고 소송을 당하는 경우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기업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우 그 영향은 크게 나타난다.

통상적으로 특정기업의 자신의 기업의 지적재산권권을 침해하여 방어에 성공하더라도 최저 15만달러가 소요되며, 다른 기업의 지적재산권

13) 특허청, “한국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정부(특허청)의 실천적 과제 발굴을 중심으로-”, 2007.1, pp.81-84.

을 침해한 경우에 150만 달러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뉴욕, 샌프란시스코, 보스턴에서는 그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재무적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보험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한정된 지적재산권보험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보험서비스회사(IPISC : Intellectual Property Insurance Service Corporation)¹⁴⁾가 관련 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회사(Hartford, XL insurance Co., Evanston Insurance Co.)에 중개하고 있으며, 이를 인수한 보험회사는 상호 재보험을 들어 위험을 분산하고 있다. 또 다른 보험형태는 소송리스크관리회사(LRM : Litigation Risk Management)¹⁵⁾가 자신의 고객에 대해 법률소송컨설팅을 해주면서 영국 로이드의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최근에 설립된 특허교환소(patent exchange)와 업무제휴를 하고 있는 Priceline에서 산업재산권을 포함한 영업기밀 등 포괄적인 지적재산권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한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 세 번째 형태는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관리를 전문적으로 하여 주는 벤처캐피탈 회사(Refac)가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다.¹⁶⁾

나. 보험상품의 특징

1) 독립상품운영

미국의 지적재산권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에서 담보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보험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영업배상책임약관에서 광고배상책임특약을 통해 지적재산권 리스크의 일부를 담보하고 있으나, 지적재산

14) <http://www.infringeins.com/index.asp>

15) <http://www.litigationriskmanagement.com/>

16) Danish Patent Office(June 2001),p.15

권 리스크의 완전한 담보는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적재산권의 침해는 광고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지적재산권의 침해사항은 계약자의 의도에 의해 발생하는 고의적인 사고로 되기 때문에 영업배상책임약관에서는 면책된다.

2) 보험상품의 종류

미국에서의 지적재산권 관련보험은 법적소송관련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과 소송비용 및 손해보상금을 보상하는 보험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¹⁷⁾. 지적재산권 보험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종류가 운영되고 있다. 계약자 당사자를 위한 보험(First Party IP Coverage)은 계약자가 소유한 지적재산권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그 수익원이 상실되는 경우의 직접적인 손실을 보상한다. 동 보험은 재물보험의 기업휴지손실 담보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과 유사하다. 지적재산권강화 보험(IP Abatement Coverage : Offense or Enforcement coverage)은 피보험자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타인이 침해했을 경우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제기비용 등의 관련비용을 보상한도내에서 지급하는 보험으로, IPISC, Miller 등 아주 소수의 보험회사가 제공하고 있다.

지적재산권방어비용보험(IP Infringement Defense Cost Reimbursement Coverage)은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을 경우 침해소송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상한도내로 지급하는 보험이다.

17) 미국의 지적재산권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은 <http://www.infringeins.com/app2/featu-res.asp> 참조

18) Richard S. Betterley(2006)

<표 IV-1> 미국 IPISC의 지적재산권 보험사례

	Defense Cost Insurance	IP Abatement Insurance
보험관리자	Intellectual Property Insurance Services Corporation	
보험회사	Gotham Insurance Company	Gotham Insurance Company
가입대상권리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보상한도액	1사고당 및 연간 한도액 10만달러 ~ 500만달러	1사고당 및 연간 한도액 10만달러 ~ 500만달러
자기부담금	최저 보상한도액의 2%	최저 보상한도액의 2%
Coinsurance	최저 10%	최저 20%
담보지역	미국, 계약자가 미국 내에 있는 경우 전세계를 담보지역으로 함	미국
담보비용	-보험기간내에 계약자에게 제기한 침해소송(covered litigation) -당해 지적재산권을 특허청으로 부터 재확인하는 비용 -계약자의 지적재산권에 발생한 손실 보상	-보험기간내에 제3자가 계약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계약자가 제기 한 소송비용 -제3자가 특허침해에 따른 배상금 청구시 방어비용 -당해 지적재산권을 특허청으로부터 재확인하는 비용 -소송기간 기간 동안 재발급비용
면책내용	-고의적인 침해행동 -증권상 명기되지 않은 소송 -벌금, 징벌적 배상금, 직간접 적인 간접손실 -범죄적 행동 -석면 및 핵 배상책임	-침해자의 불법성이 사전에 존재하 는 행위 -재판과 손해에 따른 배상금액 -소송이전의 발생한 비용 -지적재산권 등록자의 계약파기 -피보험자의 의도적인 침해행위 -범죄적 행동
최저보험료	-	LOL 10만/10만달러 : 1,475 \$ LOL 10만/30만달러 : 10,200 \$

자료 : <http://www.infringeins.com/>

3) 시장 규모

미국의 지적재산권보험시장의 규모는 아직까지는 적은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지적재산권 관련보험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보험은 방어비용담보보험으로 기업들이 그 니드가 많아 보다 친숙하기 때문이며 언더라이팅도 지적재산권강화보험(enforcement insurance)이나 당사자보험보다 더 용이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당사자 보험은 기업들에게 매우 귀중한 보험으로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다. 방어보험은 중소기업에게 있어서는 최고 경영자나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향후 성장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2. 유럽 국가

가. 보험운영 형태

유럽연합(EU)은 회원국 간의 통합적이고 전략적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먼저, “성장하는 유럽을 위한 의제” 차원에서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 이사회 내의 경쟁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EU 공동체 지식재산 시스템 정비를 위한 모델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위한 R&D 투자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유럽 혁신 스코어보드(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를 통한 회원국 간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수준을 비교 관리해 나가면서, 제6차 중장기 혁신계획(FP6, '02~'06)에서 “IPR Guideline”을 제정하고, EU의 연구개발 사업 참여자들에게 지적재산권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1998년부터 IPR Help Desk¹⁹⁾를 운영하고 있다.

EU국가의 지적재산권보험은 영국의 로이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

19) <http://www.ipr-helpdesk.org/index.html>

으며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등의 국가에서도 보험제도가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지적재산권보험제도의 수요가 적어 적정 수익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상품공급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프랑스의 경우 1986년까지 민영보험상품이 제공되었으나 2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 악화로 현재는 판매가 중지된 상태이다.

스웨덴도 발명협회에서 회원 등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보험상품을 1986년부터 공급하기 시작하여 1995년까지 존재했으나 그 이후 과도한 보상한도액의 요청에 따라 높은 보험료를 적용하게 되어 기업들이 보험상품을 기피하는 결과를 낳았고, 현재는 판매가 중지된 상태이다. 최근에는 독일의 ARB, Gerling Global Re, Allianz 등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²⁰⁾

이에 따라 EU 역내의 국가별 지적재산권 관련한 법규나 보호제도가 달라 단일시장에서의 통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나. EU의 특허소송보험 도입방안

1) 도입배경

1999년 EU 의회는 역내 국가들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이 지속적이고 혁신적으로 발명되게 하기 위하여 분쟁 등이 생긴 경우에 보험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SME :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의 지적재산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중점이 되었다.

이를 위해 EU 국가들이 지적재산권보험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도입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2003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보고서가 나왔다²¹⁾. 이 보고서에 의하면 EU 국가별로 유효한 특허건수에

20) Danish Patent Office(June 2001),pp.15-17.

21) CJA Consultants Ltd(Jan. 2003, June 2006) 참조(http://ec.europa.eu/internal_mar)

대비하여 소송금액과 손해액을 비교하여 보면 국가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국가 평균으로 보면 소송건당 법률비용은 214파운드이고, 건당 손해액(damages)은 7.71파운드로 전체 건당 총비용은 222.33파운드였다. 이에 따라 EU 단일의 보험제도 모델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다양하게 검토가 필요하였다.

<표 IV-2> EU국가의 특허 소송 등 비용 현황(2004)

(단위 : 파운드)

국가별	유효특허 건수	법률소송비용		총손해액		건당 총비용
		금액	건당	금액	건당	
오스트리아	83,636	284,000	3.40	30,000	0.36	3.75
벨기에	84,621	1,675,000	19.79	-	-	19.79
체코	9,807	189,000	19.27	-	-	19.27
덴마크	45,067	4,370,000	96.97	-	-	96.97
핀란드	36,064	2,940,000	81.52	62,000	1.72	83.24
프랑스	252,798	2,520,000	9.97	1,660,000	6.57	16.53
독일	307,488	224,500,000	730.11	3,500,000	11.38	741.49
그리스	27,963	190,000	6.79	40,000	1.43	8.23
헝가리	9,513	60,750	6.39	-	-	6.39
네덜란드	121,337	7,815,000	64.41	100,000	0.82	65.23
폴란드	12,457	460,000	36.93	-	-	36.93
스페인	97,146	2,360,000	24.29	650,000	6.69	30.98
스웨덴	82,125	2,080,000	25.33	102,000	1.24	26.57
영국	257,600	56,950,000	221.08	4,860,000	18.87	239.95
합계	1,427,622	306,393,750	214.62	11,004,000	7.71	222.33

자료 : CJA Consultants Ltd(2006), p.13.

2) 가입대상 권리 및 방식

EU에서 검토 중인 지적재산권 보험제도는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특허권과 관련된 소송이 생긴 경우 소송비용을 담보하는 특허소

ket/indprop/docs/patent/studies/pli_report_en.pdf).

송보험(Patent Litigation insurance)이다.

또한 보험가입방식은 규모가 적고 리스크관리가 적극적으로 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의보험(voluntary insurance)으로 할 것인지와 강제보험(mandatory insurance)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안에서는 강제보험 방식을 형태로 결정되어 있다.

<표 IV-3> EU의 특허소송보험 도입방안

보험요소	주요내용
1.법제화	강제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은 필수
2.보험료	연간 300 파운드에서 600파운드
3.공동보험	피보험자가 최초 5000파운드 부담
4.담보(조사)	보험비용 35,000파운드
5.리스크평가	사고 후 평가
6.담보(손해액)	150만 파운드
7.담보지역	EU 국가만 담보
9.특허권 담보 강제화	모든 신규 특허권은 담보를 강제화
10.특허수와 관계	보험료의 감소는 하지 않음
11.기술고려	기술진보 여부와 무관하게 고정보험료 적용
12.담보지역	담보지역 추가여부에 관계없이 고정보험료 적용
13.담보기간	고정보험료 적용
14.중재	의무적임

자료 : CJA Consultants Ltd(2003), p.58.

임의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들이 지적재산권보험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손해액의 거대성 등으로 인해 보험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강제보험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AmCham EU는 중소기업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게 되면 소송이 빈

발해져 소송비용과 특허 등록 비용 등의 상승을 초래하여 본래 중소기업의 특허권 보호 목적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강제보험화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2007년 2월 EU에 내었다²²⁾.

2006년 6월 현재 EU국가들의 특허소송보험 도입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4> 유럽국가별 특허소송보험 도입의향

국가별	현재 보험상품 운영현황			향후 도입의견
	보험수요	상품존재여부	제공방법	
오스트리아	없음	없음	-	세제혜택, EU만담보
벨기에	없음	법률비용보험	중개사	임의보험, 세제혜택
스위스	수요가 큼	없음	-	임의보험, 세제혜택, 전세계담보
독일	최근 있음	없음	-	임의보험, 세제혜택, EU만담보
프랑스	약간 있음	법률비용보험	중개사	EU안 도입
덴마크	최근 있음	법률비용보험	중개사	임의보험
그리스	-	없음	-	임의보험, 세제혜택, EU만담보
네덜란드	약간 있음	법률비용보험	-	임의보험, 세제혜택, EU만담보
스페인	없음	없음	-	세제혜택, 전세계담보
영국	약간있음	법률비용보험	보험회사, 중개사	강제보험, EU한정담보

자료 : CEA Position paper on Feasibility study on a patent litigation insurance, 2006.7.6(<http://www.cea.assur.org/cea/v1.1/posi/pdf/uk/position306.pdf>)

22) http://www.eucommittee.be/Pops/2007/IP_PatentLitigationInsurance_02022007.pdf

3. 일본

가. 보험 운영형태

일본도 2002년 지식재산입국을 목표로 기업소유 지적재산권의 전략적 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 및 인재육성 등 4개 분야의 50여개 주요 정책을 담은 ‘지적재산 전략대강’ (知的財産 戰略大綱)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을 위해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총리실에 ‘지적재산 전략본부(본부장: 수상)’를 설치(‘03년)하여 관계부처 시책들을 종합·조정하고 지식재산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해나가는 핵심 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모방품·해적판 대책을 일본 외교상의 중요시책으로 정하여, 외무성내에 ‘지적재산권 침해 대책실’을 설치하고 「지적재산권 침해 대응매뉴얼」을 작성하여 해외공관에 배포하고 있으며, 관세정률법을 개정하여 ‘03. 4월부터 자국에 수입되는 특허권 침해물품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허권침해물품 통관보류신청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내외에서의 자국 지적재산권 보호에 노력중이다.

한편 지적재산권 보험제도는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 리스크와 제3자에 대한 리스크를 포함하여 법률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지적재산권소송비용보험이 1987년부터 검토되기 시작했고 그 후 7년간의 경과를 거쳐 1994년 중반부터 판매되고 있으며²³⁾, 2003년에는 기술사용료 손실을 담보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라이선스보험이 운영되고 있다.

23) 『일본 보험매일신문(손보판)』, 1994. 10. 3,4,5일 및 보험매일신문사 및 동경해상화재(주), “지적재산권소송비용보험について”, 「손보기획」, (주)손해보험기획, 1994.9.25 참조, 및 이기형(1995.5) 참조

나. 보험상품의 특징

1) 지적재산권소송비용보험²⁴⁾

지적재산권소송비용보험은 별도의 상품으로 개발되었으며, 보통약관과 6개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었다. 동 상품은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을 침해받은 경우(피침해조항)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소송비용을 담보하는 침해조항으로 구성된 상품이다.

지적재산권 피침해조항은 피보험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또는 중재신청으로 발생하는 비용, 권리침해자가 피보험자에게 반대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손해를 담보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 벌금, 과태료 등은 지급되지 아니한다. 지적재산권 침해담보는 피보험자의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경우를 이유로 하여 제3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또는 중재 신청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비용손해를 보상하며, 피침해담보와 비교하는 경우 당사자 주체가 바뀌었다.

부담보손해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중대한 과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정권찬탈, 내란, 무장반란, 폭동」, 「지진, 진파, 분화」, 「핵연료물질, 이의 오염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보험증권 기재 담보지역이외의 지역에서 생긴 지적재산권의 침해 또는 피침해」, 「피보험권리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계약을 피보험자와 체결하고 있는 자 또는 체결하였던 자와 피보험자간의 그 피보험권리에 관한 소송 등」 등의 절대적 면책사항이다.

동 보험에서 운영하는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공동보험비율은 지적

24) 일본의 지적재산권보험 운영현황은 이기형(1995) 참조.

재산권의 종류별 및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보상한도액은 담보지역에 따라 차등적용(기준요율 산출시의 경우 미국 US\$ 100,000, 일본 2,000,000엔, 기타국가 US\$ 100,000)한다.

2)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보험

일본 경제산업성²⁵⁾은 2003년 10월, 외국 기업이 파산 등의 이유로 지적 재산권 사용료(로알티)를 일본 기업에게 지불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분을 보상하는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보험(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icense Insurance)제도를 신설하였다. 동 보험에 가입한 일본기업은 지적 재산권 사용료에 대한 미회수 리스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외국 기업과 지적 재산권 사용계약의 확대를 통한 수익 창출이 더욱 활발히 할 수 있게 되었다. 보험제도의 운영은 경제산업성의 독립 행정법인인 일본무역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다. 보험계약의 체결은 지적재산권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보험계약에 대한 상담을 한 뒤 청약 을 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뒤 보험료납입과 증권을 발급받고 보험료는 납입하면 된다. 이외의 동 보험의 주요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보상범위

해외 거래는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국제경제가 구조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국제라이선스 사업이 점유하는 비중과 역할은 매년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동 보험은 「전쟁을 비롯한 비상위험」이나 「바이어기업의 도산 등 신용위험」에 의하거나,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로알티 등의 회수불능에 의한 손실」을 광범위하게 보상한다.

25) 니케이신문, 일본무역보험사 홈페이지(<http://nexi.go.jp/>) 2003. 9. 29

나) 보험기간

동 보험의 보험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간으로 한정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할 때 이미 다른 나라의 기업과 체결과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계약도 보험가입대상이 된다.

다) 보상한도액 및 보험료

보상한도액은 일본기업들이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에 기초하여 예정되는 대가액을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대 9천만엔을 한도로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는 보상한도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보험료는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국가의 등급을 A 등급(위험도가 낮은 국가)에서 H 등급(위험도가 가장 큰 국가)로 구분하고 컨틴전시 리스크담보와 컨틴전시 리스크 및 신용리스크담보에 대한 보험료를 제시하고 있다.

<표 IV-5> 일본 지적재산권 라이선스보험의 보험료

담보국가	컨틴전시리스크 담보	컨틴전시리스크/ 신용리스크 담보
A:일본, 싱가포르, 영국, 미국 등	52,000엔	108,000엔 ~ 892,000엔
B:대만, 한국 등	261,000엔	315,000엔 ~1,068,000엔
C:중국, 멕시코 등	518,000엔	574,000엔 ~1,351,000엔
D:태국, 인도 등	668,000엔	714,000엔 ~1,360,000엔
E:러시아, 불가리아 등	858,000엔	907,000엔 ~1,591,000엔
F:인도네시아, 이란 등	1,009,000엔	1,054,000엔 ~1,692,000엔
G:캄보디아, 가나 등	1,125,000엔	1,162,000엔 ~1,690,000엔
H:북한, 라오스 등	1,312,000엔	1,349,000엔 ~1,859,000엔

라) 보험금

손실의 발생을 안 경우에는 손실 발생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그리고

보험금의 청구이전에 손실발생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상대방의 채무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결제기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위험발생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금의 청구기간은 결제기한으로부터 9월 이내에 해야 한다. 지급하는 보험금은 손실액에 보험계약 체결할 때 정한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예, 보험금 = 손실액 $\times$ 90%). 다만, 보험금의 지급은 보상한도액을 상한으로 한다.

마) 계약의 내용변경

보험계약 체결 후 라이선스 계약 등에 소정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변경일로부터 1월 이내에 또한 보험기간 내에 그 취지를 일본무역보험에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실효된다.

V. 지적재산권리스크관리에 보험 활용방안

1. 보험활용 필요성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과 같은 국가 전체차원에서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기획하고,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현재는 없는 상태이다. 특히, 1998년까지는 미국 등 선진국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 요구에 대한 수동적 대응 체계 구축이라는 개별부처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만 추진되어 왔다. 1998년 이후 특허청, 산자부 등 일부 부처중심으로 지식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1998년에 “특허법원”이 설립되었고, 2000년에 “기술이전촉진법”의 제정과 2001년에 특허법의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개정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표 V-1> 국내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현황

내 용 년 도	상표법 부정경쟁 방지및영업비밀 보호에관한법률		저작권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법률		의장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총 계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2000	6,222	7,386 (619)	8,029	8,798 (29)	1,492	2,166 (37)	19,775	22,292 (829)	1,085	2,156 (14)	36,603	42,798 (1,528)
2001	7,890	9,333 (687)	7,275	7,946 (26)	2,437	3,794 (23)	12,323	14,384 (831)	1,131	2,037 (12)	31,056	37,494 (1,579)
2002	8,123	9,775 (693)	9,037	9,945 (16)	1,833	2,759 (13)	15,421	18,004 (538)	1,004	1,649 (2)	35,418	42,132 (1,262)
2003	6,657	8,542 (586)	9,488	10,641 (15)	1,541	2,603 (35)	14,677	16,869 (338)	983	1,594 (2)	33,346	40,249 (976)

주 : ()안은 구속

자료 : 한국산업기술재단(2006)

국제특허분쟁 및 모방품 침해의 급격한 증가 등이 주요 현안이 되어 2004년을 전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범정부 협의체에서 지식재산 정책이 서서히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나 구체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기업의 지적재산권관련 침해로 인한 피해는 증가하고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V-1>의 지적재산권 관련 침해현황을 보면 침해는 매년 3만건 이상 발생하며, 이에 관계된 인원은 4만명이 넘어서고 있고 관련법규에 의해 구속되는 사람도 1,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최근 7년간(1999-2005) 산업재산권에서 소송 제기건수를 보면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은 연평균 153,963건이며 이중 5.8%(9,069건)가 심판청구되고 있다.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는 870건으로 전체보유건수의 0.57%에 이르며, 대법원에 상고되는 건수는 346건으로 전체등록건수의 0.23%에 이른다. 이것은 국내기업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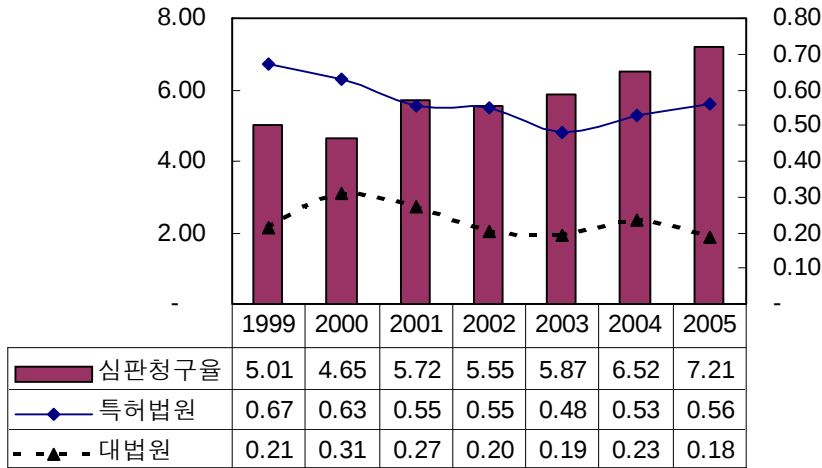
<표 V-2> 국내 산업재산권의 심판청구 및 소송제기를 추이
(단위 : 건, %)

년도	등록 건수	심판청구		소송건수		소송제기율	
		건수	청구율	특허법원	대법원	특허법원	대법원
1999	148,107	7,413	5.01	995	316	0.67	0.21
2000	126,395	5,880	4.65	797	393	0.63	0.31
2001	130,850	7,485	5.72	726	355	0.55	0.27
2002	153,078	8,498	5.55	840	308	0.55	0.20
2003	155,840	9,149	5.87	747	300	0.48	0.19
2004	165,375	10,779	6.52	873	387	0.53	0.23
2005	198,094	14,281	7.21	1,111	366	0.56	0.18
평균	153,963	9,069	5.79	870	346	0.57	0.23

주 : 청구율, 소송제기율은 등록건수 대비 해당 건수비율임

자료 : 특허청 홈페이지 통계자료

<그림 V-1> 산업재산권의 연도별 소송제기율 현황



그럼에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지식기반경제사회인 21세기에는 특정분야에 대한 기술력이 한 기업의 경쟁력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국가 전반에 미친다고 평가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기술 선진국들은 자국의 기술력을 보호하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들의 핵심은 보험제도이다(<표 V-3> 참조).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적재산권 관련 보험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나 기업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패소하게 되는 경우 곧 바로 유동성이 부족하여 파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심지어 EU에서는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허 등 지적재산권 침해시 소규모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무가입형태의 지적재산권 보험제도(patent litigation insurance)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표 V-3> 주요국의 지적재산권 보험 운영현황 비교

(단위 : 유로)

	미국	일본	영국	EU(안)	프랑스/ 캐나다
판매사	IPISC,LMR, IPRM, ANCO, PGFM	동경해상 등 손보사 무역 진흥공사	Abbey Legal Protection, Crawley Warren, Firstcity	-	Breese and Brinks
보상한도	10만~300만	10만달러	16만~160만	150만 파운드	15만~ 150만
공동보험	20%	20%	-	5000 파운드	20%
연 보험료	1000~ 10,000	-	7,500~ 75,000	300~ 600파운드	1,000~ 10,000
부보대상 권리	특허,저작권, 상표권	특허,상표, 저작권, 실용신안권	지적재산권	특허권	지적재산권
담보지역	미국	일본, 미국	전 세계	EU지역	전 세계

자료 : Danish Patent Office(2001), p.19 및 이기형(1995)에서 작성

2. 보험 활성화를 위한 요건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수요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는 기술적인 측면과 수요측면에서 필요한 요건을 만족될 때 가능하다. 보험시장에서 특정분야에서 보험상품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 하나가 만족하지 못하거나 두 가지 전부가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한다. 예를 들면 자연재해 위험을 담보하는 농작물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 등은 수요도 한정되고 공급도 한정된 사례에 해당한다. 이들 보험의 경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수요쪽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보조해주고 있고 공급측면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지원과 거대손해에 대한 국가재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지적재산권 리스크의 보험화를 위한 조건을 살펴보았다.

가. 보험기술적 측면

지적재산권 리스크가 보험 기술적으로 부보가능한 리스크(insurable risk)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대량의 위험집단(large number of exposure)이 있어야 하는데, 2005년에 국내의 경제주체들이 19만 8,000천건의 지적재산권을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집단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통계적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확보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지적재산권 리스크의 사고발생이 우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accidental and unintentional loss). 이 경우 지적재산권은 사고는 무형의 재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네트워크가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제3자가 의도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우연성은 다소 낮을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지적재산권의 리스크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을 측정 가능(determinable and measurable loss)해야 하나, 지적재산권의 국제성과 시간가치의 변동, 국가 간 배상책임법리나 관련법규의 차이로 인해 손해액 측정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네 번째로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거대손해가 없어야(no catastrophic loss) 보험상품화가 가능하나 특허괴물(patent troll)²⁶⁾과 같이 의도적인 접근이 되는 경우 큰 손해액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는 지적재산권의 리스크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할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26)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특허괴물(patent troll)은 특별한 생산 시설 및 영업조직을 두지 않고, 몇몇 발명자, 기술전문가 및 특허소송 변호사를 채용하여 특허를 둘러싼 소송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특허소송 전문 기업을 의미한다. 특허괴물은 현재 시장에서 상당한 수익을 내는 국내,외 대기업을 먹이감으로 삼고, IT 분야를 중심으로 특허소송에서 승리하여 수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제까지 알려진 특허괴물은 인터디지털(InterDigital), NPT, 포젠트 네트워크(Forge nt Networks), 인텔렉추얼 벤처스(Intellectual Ventures), 아카시아 리서치(Acacia Research), 오션 토모(Oecon Tomo), 머크익스체인지(Mercexchange), 텔레플렉스(Teleflex)의 8개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겨레신문』, 2007.8.21.

(calculable probability of loss). 이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의 등록이나 소송발생 및 배상액 지급액 등에 대한 통계가 집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산권 리스크를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비용인 보험료는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economically feasible premium). 이 경우 국내의 지적재산권 리스크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아직은 통계 축적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적재산권 리스크에 대한 보험기술적인 측면을 종합해보면, 동질위험집단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으나 손해액규모의 추정은 다소 어렵고 때에 따라서는 대형 손해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설계될 필요성이 있다.

나. 보험수요 측면

국내의 지적재산권 수준은 세계 상위권에 속하고 있지만 기업이나 연구기관들의 지적재산권리스크관리에 대한 인식이나 수준은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국내 기업 30개, 해외기업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당한 경우에 기업이미지(브랜드)하락으로 인한 매출감소 및 기업 이미지 악화가 가장 큰 피해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로는 스타마케팅 등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진행한 홍보효과의 저하, 고객클레임 증가, 침해단속 비용 및 소송비용 등의 증가가 있다고 조사되었다.

<표 V-4> 국내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한 인식

구분	순위	관련부서 운영	외부업체 이용	관련협회 가입	사내직원 활용	없다	기타
침해 사전 대책	1순위	61.5%	2.6%	2.6%	17.9%	7.7%	7.7%
	2순위	6.7%	40.0%	10.0%	23.3%	3.3%	16.7%
	3순위	0.0%	0.0%	69.2%	23.1%	0.0%	7.7%
침해 사후 대책	순위	경고장발송 (내용증명)	법적조치 (고발소송)	구두조치 (경고)	조치없음	기타	
	1순위	71.8%	10.3%	2.6%	5.1%	10.3%	
	2순위	3.2%	71.0%	19.4%	3.2%	3.2%	
	3순위	5.0%	10.0%	80.0%	0.0%	5.0%	
권리 보호 애로 사항	순위	인식부족	인력부족	예산부족	정보미비	공공기관 협조미비	
	1순위	40.0%	22.9%	2.9%	22.9%	11.4%	
	2순위	3.2%	38.7%	22.6%	29.0%	6.5%	
	3순위	26.9%	7.7%	19.2%	30.8%	15.4%	

자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06), pp.121-123.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고려하는 사항을 보면 관련부서운영을 1순위로 응답하였으나 기업내에서 침해방지관련부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 다음으로는 외부전문기관(특허사무소, 세관, 경찰) 등을 이용하거나 관련협회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여 공동대응하며, 기타로는 현지거래처를 이용한 정보수집, 현지유통업자 및 현지 로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받은 이후 사후대책은 경고장발송(내용증명), 법적조치(형사고발, 민사소송제기), 구두조치(경고)등의 순이며,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회사 내 담당인력 부족, 온라인 판매시 판매자 인적사항 파악의 어려움, 오프라인 노점형태의 판매시 단속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기업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등 리스크관리를 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으로

는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민간의 인식부족과 기업에서 지적재산권보호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예산의 부족 그리고 정보습득과 공유 부족을 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보험가입 등 적극적인 리스크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3. 보험상품 활성화 방안

가. 보험상품 개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리스크관리는 건물이나 자동차와 같은 유형물이 아니라서 리스크의 평가와 관리가 용이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21세 지식경제사회에서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관리와 이에 기반한 경영을 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리스크는 일반 순수리스크와는 리스크의 확인, 평가와 관리대책 마련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영업배상책임보험상품으로는 지적재산권의 리스크관리 수요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적인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별도의 독립적인 지적재산권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초기에는 미국이나 유럽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품을 국내의 리스크관리 수요에 맞게 인가를 받아 운용한 뒤, 국내 실정에 맞게 약관개발과 요율산출을 하여 국내 상품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험상품에서 부보 가능한 지적재산권은 초기에는 특허권 등에 매우 한정적으로 운영하여 보험기반을 확충한 뒤에 산업재산권으로 확대하고,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보험제도가 활성화 되더라도 반도체집적 회로배치 설계권, 생명공학 기술권

등은 리스크평가 곤란 등의 보험기술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특허권 또는 산업재산권에 한정하고 있다.

보험의 담보리스크(covered risk)는 <표 II-2>에서의 지적재산권 리스크유형 중 당사자와 제3자에 대한 리스크 대처 포지션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배상청구기준(Claim Made Basis)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즉 기업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침해 또는 피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결과인 배상책임과 기대수익상실은 담보대상에서 제외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와 회수를 위한 조치비용인 리스크대처 포지션을 담보리스크로 한다는 점이다. 이 또한 지적재산권의 리스크 평가 곤란 등의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리스크대처 포지션에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5> 미국과 일본의 보상한도액, 공동보험비율 운용조건

구분 \ 담보지역	미국 등	일본
부보권리	특허, 의장, 상표권	특허, 의장, 상표권, 실용신안권
기준 보상한도액	US\$ 100,000	2,000,000엔
기준 자기부담금	US\$ 50,000이상으로서 US\$ 10,000단위	100만엔이상으로서 100만엔단위
공동보험비율	최저 20%	최저 20%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전 세계 국가와 소송비용을 주 담보로 하기 때문에 국가별 소송비용 수준이나 보험의 운용상황을 감안하여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표 V-5> 참조). 최근 EU에서 검토 중인 특허 소송비용보험의 경우 150만 파운드와 하고 있고 미국은 500만 달러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계약자의 적극적인 리스크관리를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축소하기 위해서는 자기부담금(deductible)이나 공동보험(co-insurance) 등과 같은 손해액공동분담조항(Loss Sharing

Clause)을 채택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최저 20% 공동보험비율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요율은 국내 기업들의 지적재산권별 소송비용과 관련된 통계에 기초하여 요율을 산출해야 하나, 현재는 관련통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곤란한 실정이다. EU의 경우도 특허소송비용보험의 보험료를 순보험료 방식에 의거 산출하여 시산한 바 있다. 따라서 보험요율은 요율 산출의 실질적인 한계점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규나 기업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수준을 시험요율로 산출하고 경험통계를 집적하여 국내 요율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보험가입방식

지적재산권 관련한 리스크는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기업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단계에서부터 경영활동의 최종의 단계인 상품의 판매와 고객서비스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활동과정상에 경쟁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다른 기업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생산에 활동하고 있다면 방어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판매과정 및 그 이후에의 과정에서도 상표권이나 의장 등에 있어 침해가능성 여부를 분석하여 관련리스크에 대한 보험상품 구입이나 리스크통제수단 강구 등의 리스크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기업스스로 보험가입 등의 적극적인 리스크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가 대기업의 경우에는 개별 기업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의 경우에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현실적인 제약이 많이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의 개발과 등록, 라이선스 판매 및 관리, 지적재산권 포트폴리오 및 리스크관리를 전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리스크관리연합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의 경우 경제산업성의 산하조직인 무역진흥공사에서 지적재산권 라이선스보험을 총괄로 운영하면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의 기술경쟁력을 유지하고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지적재산권리스크관리연합회는 분산된 지적재산권의 통합관리 정부조직이 마련됨과 더불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운용 등 종합리스크 관리대책의 실행조직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이들을 통해 산업별 또는 개별 기업의 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여 공급하여 저변 확대에 노력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보험가입 운영모델은 2001년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민간 손보사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다. 보험가입 유인제도 도입

지적재산권은 특정한 경제주체의 아주 귀중한 재산인 동시에 국가의 재산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개별 기업들이 활발한 지적재산권 개발활동을 전개하여 세계의 지적재산권 권리를 확보하게 되는 경우 엄청난 사용료(로열티)를 얻고 그것이 국민의 부로 재분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의 실정을 보면 특허출원율은 세계 상위권이나 일본 등 기술 선진국에 지출하는 기술로열티는 항상 적자를 보이고 있다. 그 규모를 보면 2005년의 경우 29억 달러나 된다(<표 V-6>참조).

따라서 보험제도가 국내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활동을 활발히 하도록 하는데 핵심기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유인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적재산권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이다. 이는 기업의 기술력 확보를 통

해 국민으로의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 국가의 재정 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이다. 또한 시행방안에 있어서는 기업의 매출 또는 수익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기업별로 세제혜택을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V-6>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추이
(단위 : 억달러)

연도	기술수출액	기술수입액	기술무역수지
2001	6.191	26,427	-20,236
2002	6.381	27,215	-20,833
2003	8.161	32,365	-24,203
2004	14,164	41,475	-27,311
2005	16,249	45,251	-29,002

자료 : 과기부/산업기술진흥협회, 『2006년 기술무역통계조사』, 2007

두 번째로는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한 대출 등의 금융에서 관련 리스크를 헤지 또는 리스크를 전가하거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제도를 사용토록 권고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로는 현재 지적재산권 활동과 관련하여 『조세제한처리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10조)”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11조)”, “기술이전 소득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12조)”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료의 세액공제는 없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최근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사회적 기업²⁷⁾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업의 태풍 등 재해에 대한 경감활동을 지원하기 위

27)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 2조제1항)

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2007.8.20제정)』이 200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도 국가의 부의 창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세액공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라. 지적재산권 관리 및 통계의 통합적 관리

현재 지적재산권의 관리 체계는 아래 표에서 보는 것 과 같이 정부 부처간 산재되어 있어 일관적이고 효과적인 보호체계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기술력의 급진보에 따라 지식재산의 융합화 현상이 21세기에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 부처간의 협력과 조율이 지속되어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관리 솔루션이 만들어져야 한다.

<표 V-7> 신지식재산에 대한 소관부서 현황

신지식 재산권	관리기관
컴퓨터프로그램(S/W)	특허청, 정보통신부
식물신품종	특허청, 농림부
지리적 표시	특허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등
전통지식	특허청,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자료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2005)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정부 부처간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다.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지적재산권보호정책협의회”를 더욱 활성화시켜서 부처간 추진과제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부처간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목표와 실적을 구체화하여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사회를 준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부의 일관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지적재산권 관련하여 제반통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영국 등 통계량이 축적된 국가의 효율수준에 의거 과도

한 보험료 부담을 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될 우려가 있다. 보험료는 담보위험에 대한 발생빈도와 사고심도를 추정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장기간의 통계량이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지적재산권별로 제품별로 침해건수와 침해관련 법률비용 등 다양한 통계가 없어 적절한 요율을 산출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표 V-8>지식재산 관련 부처 소관 법률

정부부처	소관법률	TRIPs 영역
특허청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법,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특허법(식물변종보호),상표권,지리적표시,미공개정보보호,디자인,반도체배치설계
문화관광부	저작권법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정보통신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법무부	민사 및 형사소송법 등	민사/형사소송절차 및 규제
관세청	관세법	국경조치관련 특별 요건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지리적표시, 지적재산권의 남용방지
농림부	종자산업법, 농약관리법	식물특허, 미공개정보보호
보건복지부	약사법	미공개정보보호

자료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2005)

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관부처별로 이를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이를 종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보험산업의 경우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제반 통계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집적하고 보험회사는 이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산출하여 사용하고 있는 형태를 참고하여 볼 필요성이 있다.

현재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된 통계는 부처간 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통합작업이 필요하다.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통관에서 압류되는 자료와 국세청 및 검찰에서 단속에 의한 자료, 그리고 특허청 위조상품 신고센터를 통해서 제공되는 자료 등,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자료가 통합되어 있지 않아 국가적인 관련 통계가 집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허청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침해와 관련된 통계청 승인 통계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부의 정책담당자와 민간에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통계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보험제도를 통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다.

VI. 결론

21세기에 경제성장의 중심에서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경제적 가치가 빠지고는 성립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연구개발투자에 적극적이어서 다행스런 일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기준으로 특허 출원율은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하며 특허특성을 나타내는 GDP 10억 달러당 출원건수는 세계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개발활동으로 인한 성과인 기술무역액을 보면 24억 달러 적자로 미국, 일본 등 기술선진국에 비해 기술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에 있다. 지적재산권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다는 것은 IBM이나 소니, Dupont에서 알 수 있다.

<표 VI-1> 각국별 기술무역액(2003년)

(단위 : 억 달러)

국명	수출액	수입액	수지차
한국	8.2	32.4	-24.2
미국	48,227.0	20,049.0	28,178.0
일본	13,044.0	4,863.0	8,181.0
독일	21,957.0	23,095.0	-1,138.0
프랑스	5,188.0	3,234.0	1,954.0
영국	22,495.0	9,569.0	12,926.0

주 : 우리나라의 2004년 수출액은 14.16억 달러, 수입액은 41.47억 달러임.

국내 기업들의 지적재산활동은 활발하지만 기업들의 리스크관리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데 그 주요요인은 인식의 부족과 전문 인력 및 전문조직의 부재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기업 자체적으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리스크관리는 어려운 현실적

인 여건인 만큼 국가에서 정책적 유도를 할 필요성이 있고 보험제도를 통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기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보험회사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침해에서 라이선스 판매비용(로알티) 복구에 이르기 까지에 해당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의 경우 경제산업성에서 지적재산권 라이선스보험제도를 개발하여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EU에서는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개발활동을 촉진하고 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허소송보험제도(patent litigation insurance)를 강제보험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험제도를 통한 리스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통계가 특허청을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집중 관리될 필요성이 있다. 분산된 통계로는 신뢰성이 낮아 국내의 종합적인 요율을 산출할 수 없어 해외 요율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제도의 운영은 관리능력이 부족한 기업이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보다는 지적재산권리스크관리연합회를 조직하여 이를 통해 가입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지적재산권보험은 새로운 보험으로 다른 보험에 비해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와 언더라이팅도 어려운 종목에 해당한다. 지적재산권 보험이 활성화된다면 국내 기업이 활발한 지적재산권 개발이 이루어져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수출국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과학기술부 보도 자료, www.most.go.kr/2006. 8. 17.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지식재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검토보고서, 2005.7.28
- 권재열·임구영, 『기업특허관리전담부서의 발전전략』 연구보고서 2004-9,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4, p.56.
- 『동아일보』 2005.12.14,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박수호·김정혁, 『매경이코노미』, 2006.11.13
- 신호철, “지적재산권보험의 의의와 도입전망”, 『손해보험(2003.4)』, 2003.5, p.49
- 왕윤중, 「지적재산권 국제화의 방향과 과제」, pp.104-105
- 이기형, 『지적재산권 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Insurance Forum 9)』, 1995.5
- 이남훈, 「지적재산권분쟁의 법률상담」, 법전출판사, 1993.9, pp.34-35.
- 조영선, “미국의 특허소송절차에 대한 고찰 -법관의 기술이해를 중심으로-”, 특허청 홈페이지 정보광장 연구회자료, 2005.05.04
- 최용규·박동준·김관조, 『지적재산권 : 법리와 실제』, 홍문관, 2004.8, pp.23-24.
- 특허청 홈페이지 정보광장 연구회자료, 2005.05.04(<http://patent.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do>)
- _____, “특허관련 국제기구 현황(제262회 정기국회 국감자료)”, 2006.10.10
- _____, 한국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정부(특허청)의 실천적 과제 발굴을 중심으로-, 2007.1, p.33
- _____, “한국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정부(특허청)의 실천적 과제 발굴을 중심으로-”, 2007.1, pp.81-84.
- _____, 『2006 지식재산백서』, 2007.
- _____, 지적재산권통계(http://www.kipo.go.kr/kpo2/user.tdf?a=user.html.HtmlApp&c=3041&catmenu=m03_04_01)
- 한국산업기술재단, 『국내지식재산현황분석 및 평가 연구보고서』, 2006.9

한국전자산업진흥회, 국제특허분쟁대응 표준 Manual 전집, 2005, <http://www.ipac.or.kr/>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국내외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위조상품 억제를 위한 정책방안을 중심으로-』, 2006. 11.

保険毎日新聞(損保版), 保険毎日新聞社, 1994年 10月 3, 4, 5日

内田辛男, 「美國保險營業のA.B.C」, 保険毎日新聞社, 1994

東京海上火災(株), “知的財産權訴訟費用保險について”, 「損保企劃」, (株)損害保險企劃, 1994.9.25

니케이신문, 일본무역보험사 홈페이지(<http://nexi.go.jp/>), 2003. 9. 29

A National Underwriter Publication, "The Fire Casualty and Surety Bulletins- Special Lines", 1990

CJA Consultants Ltd, *PATENT LITIGATION INSURANCE ; A study for the European Commission on possible insurance schemes against patent litigation risks*, Jan. 2003과 June2006(http://ec.europa.eu/internal_market/indprop/docs/patent/studies/pli_report_en.pdf).

Danish Patent Office, *Economic Consequences of legal Expense insurance for patents*, June 2001, pp.15-17.

John H. Mages, Oscar N. Serbein, "Property and Liability Insurance", *IRWIN Series in Risk and Insurance*, 1967, pp.654-656

Kimberly K. Cauthorn, *A Closer Look :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Risk : Because knowledge is A Company's Great Asset*, Marsh & McLennan Companies, 2004

Masayuki MIYAKE • Yuji MUNE • Keiichi HIMENO, "Strategic Intellectual property Portfolio Management", *NRI Papers* No.83, Nomura Research Institute, 2004.12, p.3

Richard S. Betterley, "Intellectual Property Insurance market Survey 2006: A Pro-duct that Deserves more attention than it gets", *THE BETTERLEY REPORT*, April 2006(http://www.betterley.com/adobe/pims_06_nt.pdf)

Shigeki Kamiyama, • Jerry Sheehan • Catlina Martinez, *Valuation and*

- Exploit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OECD STI Working Paper, 2006/5, June 2006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2006 WIPO PATENT REPORT: Statistics on Worldwide Patent Activities, 2007, pp.15-16.
- Zaneta Jaunzeme, *Intellectual Property Risks and Solutions*, Marsh & McLennan Companies, 2005.6
- <http://www.infringeins.com/index.asp>
- <http://www.litigationriskmanagement.com/>

부 록

I.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현황

1. 지적재산권 출원 현황¹⁾

가. 국내 출원 현황

'05년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는 총 359,207건으로 '04년의 327,516건에 비하여 9.7%(31,691건)가 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 권리별 출원 증가율은 특허출원 14.8% 증가, 실용신안등록출원 1.5% 감소, 디자인등록출원 9.8% 증가, 상표등록출원 6.8% 증가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재산권의 연도별 출원추이를 보면 '01년 289천건에서 매년 상승하여 '05년 359천건이 출원되었으며, 향후 국가경제가 회복되는 경우 산업재산권 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0만건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A-1>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특 허	104,612 (2.6)	106,136 (1.5)	118,652 (11.8)	140,115 (18.1)	160,921 (14.8)
실용신안	40,804 (9.8)	39,193 (△3.9)	40,825 (4.2)	37,753 (△7.5)	37,175 (△1.5)
디 자 인	36,867 (8.9)	37,587 (2.0)	37,607 (0.1)	41,184 (9.5)	45,222 (9.8)
상 표	107,137 (△2.7)	107,876 (0.7)	108,917 (1.0)	108,464 (△0.4)	115,889 (6.8)
계	289,420 (2.2)	290,792 (0.5)	306,001 (5.2)	327,516 (7.0)	359,207 (9.7)

주 : 1)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율임.

2) 복수디자인, 다류 상표출원의 경우 포함하지 않음.

자료 : 특허청, 『2006 지식재산백서』, 2007(이하 동일)

1) 국내의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에서 사용한 통계는 특허청, 『2006 지식재산백서』, 2007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혀둠.

각 권리별 주요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특허출원은 160,921건으로 전년대비 14.8% 증가하였으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은 37,175건으로 전기·토목분야 및 내국인의 출원을 감소로 전년에 비하여 1.5% 감소하였다. 디자인등록출원은 45,222건으로 전기·전자·통신기계기구 및 주택설비용품 등의 출원증가, 미국 등의 외국인 출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9.8% 증가하였으며, 상표등록출원은 115,889건으로 서비스업, 화학류·약제·화장품 등의 출원증가 및 내국인의 출원증가로 전년대비 6.8% 증가하였다

<표 A-2> 주요국에 대한 국내의 특허출원 추이
(단위 : 건,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평균 증가율
미국	한국인	5,705 -	6,719 (17.8)	7,937 (18.1)	10,411 (31.2)	13,646 (31.0)	(24.5)
	내국인	295,926 -	326,508 (10.3)	334,445 (2.4)	342,441 (2.4)	356,943 (4.2)	(4.8)
일본	한국인	2,993 -	3,309 (10.6)	3,811 (15.2)	4,403 (15.5)	5,781 (31.3)	(18.2)
	내국인	436,865 -	439,175 (0.5)	421,044 (-4.1)	413,092 (-1.9)	423,081 (2.4)	(-0.78)
유럽	한국인	959 -	1,165 (21.5)	1,408 (20.9)	2,075 (47.4)	2,871 (38.4)	(32.1)
	내국인	100,692 -	110,025 (9.3)	106,243 (-3.4)	116,613 (9.8)	123,706 (6.1)	(5.45)
중국	한국인	1,861 -	2,498 (34.2)	3,626 (45.2)	5,015 (38.3)	- -	(39.2)
	내국인	170,682 -	203,573 (19.3)	252,631 (24.1)	308,487 (22.1)	353,807 (14.7)	(20.1)

주 : 각 주요국의 연보(annual reports)에 의한 통계자료임

한편 산업재산권 주요 4개국의 최근 5년간 출원동향을 특허 출원동향을 통하여 <표 A-2>에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출원건수를 보이는 국가는 일본으로 최근 5년간 평균 특허 출원건수가 426,65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많은 특허 출원건수를 보이는 국가로는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EPO)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주요국에 대한 특허 출원 추이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EPO)에 대한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증가율은 각각 24.5%, 18.2%, 32.1%로 자국내의 증가율인 4.8%, -0.78%, 5.4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증가율을 보인 국가는 중국으로 출원증가율이 39.2%로 주요국가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나. 국제특허 출원 현황

특허협력조약(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국제출원의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은 25.1%를 나타내고 있다. 1999. 12월부터 우리나라가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국어로서 국제출원이 가능하므로 계속적인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예상건수는 2000년 이후 둔화되고 있는 증가율을 고려할 때 금년도에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대기업의 PCT출원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약 23%정도 증가한 5,7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A-3> 한국인 국제특허 및 외국인 국내특허 출원 추이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E)
내 국 인	출원건수	2,314	2,511	2,942	3,565	4,690	5,700
	전년대비 증감율(%)	47.1	8.5	17.2	21.2	31.6	약 23.0
외 국 인	출원건수	16,690	17,874	16,981	21,183	24,482	29,378
	증감율(%)	10.4	7.1	△5.0	24.7	15.6	20.0

주 : 2006년 6월 현재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은 24.0%임.

외국인의 PCT를 통한 국내특허출원(지정관청 국내단계 진입) 건수는 2004년은 2003년 대비 24.7%의 급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05년에는 15.6%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2006년의 예상건수는 최근 2년간의 평균

증가율을 고려할 때 약 20% 정도 증가한 29,400여건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경제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국제특허출원을 통한 외국기업들의 국내기술시장에 대한 진출이 더욱 커질 것으로 특허청은 분석하고 있다.

2. 지적재산권 등록현황

산업재산권의 2005년 신규 설정등록은 198,094건으로 전년대비 19.8% 증가하였으며 권리별로 보면 특허, 디자인, 상표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49.8%, 9.6%, 13.2%의 증가를 보였으나, 실용신안의 경우는 4.3%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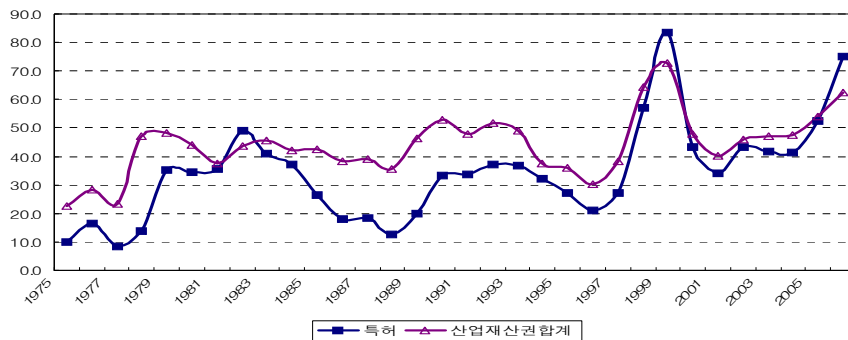
<표 A-4> 산업재산권별 연도별 등록 추이
(단위 : 건, %)

연도별 권리별	2001	2002	2003	2004	2005
특 허	34,675 (△0.8)	45,298 (30.6)	44,165 (△2.5)	49,068 (11.1)	73,512 (49.8)
실용신안	43,842 (5.0)	39,957 (△8.9)	37,272 (△6.7)	34,182 (△8.3)	32,716 (△4.3)
디 자 인	18,650 (△1.0)	27,235 (46.0)	28,380 (4.2)	31,021 (9.3)	33,993 (9.6)
상 표	33,683 (9.2)	40,588 (20.5)	46,023 (13.4)	51,104 (11.0)	57,873 (13.2)
합 계	130,850 (3.5)	153,078 (17.0)	155,840 (1.8)	165,375 (6.1)	198,094 (19.8)

주 : ()는 전년대비 증감률임.

또한 지적재산권의 등록을 법인별로 구분하여 보면 개인과 법인 모두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개인은 2005년 현재 64,936건을 등록하여 전년대비 12.7%성장하였으며, 법인은 133,158건으로 전년보다 23.6% 증가하였다. 내외국인별로 구분하여 보면 외국인이 국내에 등록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 31,779건으로 전년대비

<그림 A-1>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대비 등록건수 비율 추이



23.1%나 증가한 반면에 내국인 166,315건으로 전년보다 19.2%증가하였다. 외국인 등록을 국가별로 보면 일본, 미국, 독일은 특허 및 실용신안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프랑스,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는 상표등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A-5> 지적재산권의 법인별, 내외국인별 등록 추이

(단위 : 건,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전년대비
개 인 법 인	개 인	49,640 (37.9)	56,443 (36.9)	55,117 (35.4)	57,635 (34.9)	64,936 (32.8)	12.7
	법 인	81,210 (62.1)	96,635 (63.1)	100,723 (64.6)	107,740 (65.1)	133,158 (67.2)	23.6
내 외 국 인	내국인	109,450 (83.6)	127,588 (83.3)	130,520 (83.8)	139,549 (84.4)	166,315 (84.0)	19.2
	외국인	21,400 (16.4)	25,490 (16.7)	25,320 (16.2)	25,826 (15.6)	31,779 (16.0)	23.1
합 계		130,850 (100.0)	153,078 (100.0)	155,840 (100.0)	165,375 (100.0)	198,094 (100.0)	19.8

주: ()는 점유비율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등록은 1948년 11건(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디자인 5건)을 시작으로 2005년 말 현재 총 2,034,478건이 등록되었으며2), 이중 존속건수는 1,306,359건이고, 존속기간만료, 등록료미납, 권리

포기,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된 권리는 728,119건으로 전체 등록건의 35.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A-6> 지식재산별 내·외국인 등록, 소멸, 존속 현황

(단위 : 건, %)

권리		내국인		외국인		내·외국인		점유율		
		2005	누계	2005	누계	2005	누계	등록	소멸	존속
특허	등록	53,416	325,653	20,093	194,368	73,509	520,021	25.6		
	소멸	12,902	68,571	11,286	70,727	24,188	139,298		19.1	
	존속	40,514	257,082	8,807	123,641	49,321	380,723			29.2
실용	등록	32,104	366,082	612	13,052	32,716	379,134	18.6		
	소멸	36,263	174,842	636	9,234	36,899	184,076		25.3	
	존속	△4,159	191,240	△24	3,818	△4,183	195,058			14.9
디자인	등록	31,039	353,149	2,952	31,646	33,991	384,795	18.9		
	소멸	16,256	201,002	1,047	16,391	17,303	217,393		29.9	
	존속	14,783	152,147	1,905	15,255	16,688	167,402			12.8
상표	등록	49,751	544,962	8,121	205,566	57,872	750,528	36.9		
	소멸	13,228	133,400	4,283	53,952	17,511	187,352		25.7	
	존속	36,523	411,562	3,838	151,614	40,361	563,176			43.1
합계	등록	166,310	1,589,846	31,778	444,632	198,088	2,034,478	100.0		
	소멸	78,649	577,815	17,252	150,304	95,901	728,119		100.0	
	존속	87,661	1,012,031	14,526	294,328	102,187	1,306,359			100.0

3. 국제조약 가입현황

1980년대에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개를 펼쳐온 지적재산권은 1990년대에 들어서는 세계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UR의 TRIPs(지적재산권 교섭), 미국의 포괄무역법에 의한 슈퍼301조 및 관세법 337의 강화, EU통합에 의한 EU판 지적재산권 규칙제정 등은 '80년대와는 다

2)특허청 홈페이지 자료실 통계자료의 지적재산권 통계(http://www.kipo.go.kr/kpo2/user.tdf?a=user.html.HtmlApp&c=3041&catmenu=m03_04_01) 참조.

른 큰 변화를 주었다. 이는 21세기 국제사회에서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EU등 선진국은 쌍무적 협상을 통하여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개발도상국으로 부터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국제 협약이나 협정(조약)이 운영되고 있다.

지적재산권 국제조약은 범세계적이거나 지역적 차원에서 이미 한 세기 전부터 존재하여 왔다. 가장 대표적인 국제조약은 특허와 상표 등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1883), 저작권보호를 위한 베른 조약(1886)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협약들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있다. 동 기구는 UN의 14번째 전문기관으로서 1967년 7월 14일의 스톡홀름의 세계지적소유권기관 설립 조약에 의거, 1974년 12월 에 스위스 제네바에 설치되었으며 ,2006년 10월 현재 회원국수는 183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79년에 3월 1일에 가입했고 북한도 1974년 8월에 가입하였다. WIPO의 주요기능³⁾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촉진시키기 위해 새로운 조약의 장려, 각국의 국내법 근대화, 관련 정보수집·제공 및 기술적 지원 등을 하는 부문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각종 협약들 사이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공동사무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기능으로 요약할 수 있다. 회원국이 될 수 있는 요건은 파리협약이나 베른협약에

3) WIPO의 주요기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세계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등) 및 저작권/저작인접권(방송, 실연, 인터넷상 저작권보호 등) 관한 23개 국제조약 제정·개정 및 관리한다. 둘째, 특허, 상표, 의장 등에 대한 국제출원 및 등록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세계적으로 효율적인 권리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셋째, 국제특허출원제도(PCT), 국제상표등록을 위한 마드리드 제도, 의장 등록을 위한 헤이그시스템 등을 운영한다. 넷째, WIPO Worldwide Academy(WWA)를 통해 세계 각국의 지적재산권 담당공무원, 학계와 연구기관의 종사자 및 기업들에 대한 전문지식 보급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다섯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각종 세미나, 포럼, 심포지움, 워크숍 등을 개최함으로써 해당국의 지적재산권제도 발전 및 인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여섯째, 지적재산권 시스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특허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산화 사업 추진 및 개발도상국의 전산화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일곱째, 도메인네임과 상표권간 충돌, 유전자원·전통지식·민간 전승물 보호, 인터넷환경에서의 저작권보호 등 최근 이슈에 대한 연구 및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있다.

가입한 국가이거나 UN회원국일 경우 자격이 주어진다.

<표 A-7> WIPO 주관하의 지적재산권 관련 협약

구 분	조 약 명	총 가입국 (주요국)	채 택 일 (발효일)	한국 가입일
일 반 (1)	Paris 협약 (산업재산권 보호)	169개국 (미,일,독,프,중,북한)	1883. 3. 20 (1884. 7. 7)	'80. 5. 4
상 표 (7)	Madrid 협정 (상표의 국제등록)	본협정 56개국 (독,프,스페인,북한)	1891.4.14 (1893. 3. 1)	미가입
		의정서 68개국 (일,독,프,영,북한)	'89. 6. 27 (95. 12. 1)	'03. 4. 10
	상표법조약(TLT) (상표출원절차 통일화)	34개국 (일,영,스페인,러시아)	'94. 10. 27 (96. 8. 1)	'03. 2. 25
	Madrid 협정 (허위출처방지)	34개국 (일,독,프,영,스페인)	1891. 4. 14 (1892. 6. 15)	미가입
	Nice 협정 (상품의 국제분류)	79개국 (미,일,독,중,북한)	'57. 6. 15 (61. 4. 8)	'99. 1. 8
	Lisbon 협정 (원산지명칭 보호 및 등록)	25개국 (프,이태리,포르투갈)	'58. 10. 31 (66. 9. 25)	미가입
	Vienna 협정 (도형상표분류)	23개국 (프,스웨덴,네덜란드)	'73. 6. 12 (85. 8. 9)	미가입
	Nairobi 조약 (올림픽심볼 보호)	45개국 (이태리,러시아,인도)	'81. 9. 26 (82. 9. 25)	미가입
디자인 (2)	Hague 협정 (디자인의 국제등록)	42개국 (독,프,이태리,북한)	'25. 11. 6 (28. 6. 1)	미가입
	Locarno 협정 (디자인의 국제분류)	47개국 (독,프,스페인,중,북한)	'68. 10. 8 (71. 4. 27)	미가입
특 허 (4)	Strasbourg 협정 (IPC 특허분류)	57개국 (미,일,독,프,중)	'71. 3. 24 (75. 10. 7)	'98.10. 8
	특허협력조약(PCT)	133개국 (미,일,독,프,중,북한)	'70. 6. 19 (78. 1. 24)	'84. 8.10
	Budapest 조약 (미생물기탁)	65개국 (미,일,독,프,중)	'77. 4. 28 (80. 8. 19)	'88.3.28
	특허법조약(PLT)	14개국 (덴마크,우크라이나)	'00. 6. 1 (05. 4. 28)	미가입

자료 : 특허청, “특허관련 국제기구 현황(제262회 정기국회 국감자료)”, 2006.10.10

특허협력조약(PCT)은 파리협약에 기초하여 1970년 워싱턴에서 체결

된 국제조약이다. 현재 가입국수는 45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84년 5월 15일자로 동 조약의 회원국이 되었다. 특허협력조약은 특허출원 절차의 국제적 통일화와 간소화에 제도적 의의가 있다. 즉 출원서의 양식과 출원절차 등이 통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파리협약에 의한 외국에의 출원은 일정 기간내에 개별국가마다 별도의 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특허협력 국제출원은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면서 그 출원서에 발명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국가들을 함께 지정하는 경우 각 지정국마다 출원이 된 것으로 간주되며 지정국에서의 출원일은 최초 출원서를 제출한 날로 인정되어 각 지정국가별로 심사를 받게 된다.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은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이 있다. WIPO주관하에 문예 창조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이 협약의 제 규정들은 내국민대우원칙 외에 파리협약의 속지주의적 특성과는 달리 일정한 국제적 보호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저작권법은 특허 등 산업재산권 관련 법규에 비하여 국제적 통일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편이다.

II.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의 국제 비교

1. 형사벌의 비교

	미국 ()인도재법		영국		독일		프랑스(수범은 2배)		일본	
상표권	장역 10년(20년) 이내	또는 벌금 200만(500만) 달러 이하	장역 10년 이내	또는 벌금(법정액)	장역 5년 이내	또는 벌금(법정액)	장역 4년 이내	또는 벌금 40만유로 이하	장역 5년 이내	또는 벌금 500만엔 이하
	법인	500만(1,500만) 달러 이하의 벌금	대표자처벌	대표자처벌	조직적 침해시 5년 이내, 벌금 50만 유로 이하	징역 1억 5천만엔 이하의 벌금 대표자 처벌				
저작권	장역 5년(10년) 이내	또는 벌금 25만달러 이하 또는 범죄행위에 의한 총수익의 2배 이하	장역 10년 이내	또는 벌금(법정액)	장역 5년 이내	또는 벌금(법정액)	장역 3년 이내	또는 벌금 30만유로 이하	장역 5년 이내	또는 벌금 500만엔 이하
	법인	벌금 50만달러 이하 또는 범죄행위에 의한 총수익의 2배 이하	대표자처벌	대표자처벌	대표자처벌(조직적 침해시 장역 5년 이내 벌금 50만유로 이하)	징역 1억 5천만엔 이하의 벌금 대표자 처벌				
권리관리정보 기술적 보호 조치의 해 제	장역 5년(10년) 이내	또는 벌금 50만(100만) 달러 이하	장역 2년 이내	또는 벌금 법정형	-	-	-	-	장역 3년 이내	또는 벌금 300만엔 이하
	법인		대표자처벌						대표자 처벌	
특허권 디자인	없음		없음		장역 5년 이하	또는 벌금(법정형)	장역 3년 이내	또는 벌금 30만유로 이하	장역 5년 이내	또는 벌금 500만엔 이하
					대표자처벌	조직적 침해시 장역 5년 이내 벌금 50만유로 이하	징역 1억 5천만엔 이하의 벌금 대표자 처벌			
반도체 회로 배치권	없음		없음		장역 5년 이하	또는 벌금(법정형)	없음		장역 3년 이내	또는 벌금 100만엔 이하
					대표자처벌				대표자 처벌	
영업비밀	장역 15년 이하	또는 벌금 50만 달러 이하	-		장역 3년 이하 (해악사범의 경우 5년)	또는 벌금(법정형)	장역 2년 이내	또는 벌금 3만유로 이하	장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엔 이하
	법인	벌금 100만 달러 이하			-	-	-	-	대표자 처벌	

자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06), p.76.

2 정보 증거의 수집 및 보전 등의 조치 비교(소송제기 판결전의 절차)

구 분	미국	EU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증거보전 (수색 사전 압수 인도)	침해품, 제조기구, 거래서류(상표· 저작권)형사절 차에서도 가능	(압수 인도) 침해품, 제조기구, 거래장부	가능(저작권 만) 공공의 경우에 자력구제도 가능		(수색 기술) 침해품 형사절차 에서는 침해품 제조 설비의 압수	가능
침해에 대한 정보제공			가능 (침해품 소재지)			
사전수색· 폐기	침해품 제조기 구(저작권 위 법기구 마스크 워크) 사절차. 침해품 폐기		부패하기 쉬운 것		(압수) 침해품(상 표 저작권 만)	
재산보전		(압수) 유형 무형의 자산, 상업장부	가능 (재산의 이전 금지등 회계 장부의 제출)			가능
예비적 금지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증거제출 명령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주 : 1) 증거제출명령은 통상 소송절차 중에 인정된다.

2) 증거제출명령이외의 민사 절차에 대하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제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명령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 통상이다. 다만 이 경우 소정의 기간 내에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기회가 마련된다. 또한 소정의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령은 실효한다.

3) 영국에서의 자력구제는 경찰 등에 사전통지를 하지만, 공권력의 행사를 이용할 수 없다.

자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06), p.77.

3. 침해행위 금지 예방 조치 비교(판결에 의한 것)

구분	미국		EU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민사	형사	민사	형사	민사	민사	형사	민사	형사	민사	형사
금지명령	가능	-	-	-	가능	가능	-	가능	-	가능	가능
압수·인도	-	-	가능	-	(압수·인도) 침해품, 판매자료, 제조기구	-	-	침해품	-	가능	가능
침해상품의 제거	-	-	-	-	(제거) 침해품, 판매자료, 제조기구	가능	-	-	-		
폐기·인도·몰수	(폐기) 라벨 침해품, 제조기구	(폐기) 라벨 침해품 제조기구 (몰수) 범칙행위에 사용한 자산	(화수 폐기 기타 처분) 침해품, 제조기구	(침해품)	(제거 인도 폐기 몰수) 침해품, 판매자료, 제조기구	(폐기) 침해품, 제조기구	(압수) 침해품	(몰수) 제조기구	(몰수 인도 폐기) 침해품· 제조설비 (상표 저작권만)	(폐기)	(몰수 폐기) 침해품
공장 폐쇄	-	-	-	(가능)	-	-	-	-	가능	가능	가능
자격 정지	-	-	-	(영업정지)	-	-	-	-	영업정지		
정보 제공	-	-	가능(제조장소, 제조, 판매 등 관계자의 주소, 성명, 침해품의 수량)	-	-	가능 (제조장소, 제조, 판매 등 관계자의 주소, 성명, 침해품의 수량)	-	-	-		
판결 공개	-	-	가능	(가능)	-	가능 (저작권 디자인보호권)	가능	가능	가능(상표 저작권만)	가능	가능
기타	-	-	-	(사법감시, 공적보조 불가)	-	-	-	-	(사법감시, 공적보조 불가)		

자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06), p.78.

보험개발원(KID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96-1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이후의 보험시장 전망과 대응방안 / 최용석 1996.4
- 96-2 보험회사 종합금융기관화 전략 / 오영수 1997.2
- 96-3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사회적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자동차보험 무보험 운전자 문제를 중심으로 / 서영길, 박중영 1997.3
- 96-4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적정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7.3
- 96-5 보험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 김규승, 양성문, 장강봉 1997.3
- 96-6 분리계정제도의 도입타당성과 세부도입방안 / 이근영, 박태준, 장강봉 1997.3
- 96-7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 (I) : 총론 / 오영수, 이경희, 김란 1997.3
- 96-8 생명보험 가격자유화 방안 : 예정이율 및 계약자배당을 중심으로 / 정봉은, 노병윤, 목진영 1997.3
- 96-9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효율화 방안 / 김규승, 박홍민, 장재일 1997.3.
- 97-1 보증보험의 발전방안 연구 / 이희춘, 신동호, 이기형, 이준섭 1997.5.
- 97-2 남북 경험 증대 및 통일에 대비한 보험산업 대응방안 연구 : 독일 모델을 중심으로 / 신동호, 안철경, 조혜원 1997.11
- 98-1 보험산업의 M&A에 관한 연구 : 주요국의 M&A 추세 및 유인을 중심으로 / 김호경, 박태준 1998.1
- 98-2 생명보험회사의 적정성장에 관한 연구 / 이원돈, 이승철, 장재일 1998.2
- 98-3 생명보험 예정사업비의 합리적 결정에 관한 연구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8.2
- 98-4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II) : 연금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8.3
- 98-5 주요국의 새로운 보험판매채널 활용사례분석 및 국내사의 운용전략 / 정재욱, 정영철, 한성진 1998.3
- 98-6 보험기업 경영진단시스템 :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김호경, 김혜성 1998.3
- 98-7 퇴직연금 계리 및 재정 / 성주호, 김진억 1998.6
- 98-8 생명보험 예정이율의 안전성 분석 및 운용방안 / 이원돈, 이승철, 장강봉 1998.10

99-1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III) : 의료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9.2
99-2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제도에 관한 연구 / 이득주, 서영길, 장동식 1999.3
99-3	국민연금 민영화방안에 관한 연구 : 국민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접근방안 / 성주호, 김진익 1999.3
99-4	손해보험 상품개발시스템 및 전략에 대한 연구 / 신동호, 이희춘, 차일권, 조혜원 1999.3
99-5	생존분석기법(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생명보험 실패·해약 분석 / 강중철, 장강봉 1999.3
99-6	보험사기 성향 및 규모추정 :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 박일용, 안철경 1999.7
99-7	사업비차배당제도의 도입 및 대응방안 / 노병윤, 장강봉 1999.12
99-8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방안 / 안철경, 박일용 1999.12
2000-1	손해보험의 부가보험요율 산출 및 운영방안 연구 / 이희춘, 조혜원 2000.3
2000-2	ART를 활용한 손보사의 위험관리 방안 연구 / 신동호 2000.3
2000-3	생명보험회사 투자포트폴리오 결정요인과 투자행동 / 목진영 2000.3
2000-4	생명보험상품의 손익기여도 분석 / 노병윤, 장강봉 2000.3
2000-5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 구축 및 효율적 운영방안 / 안철경, 박일용, 오승철 2000.3
2000-6	금융겸업화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 김헌수 2000.6
2000-7	보험회사 지식자산의 가치측정모형 연구 / 이도수, 김해식 2000.8
2000-8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보사의 상품개발전략 / 류건식, 이경희 2000.9
2000-9	향후 10년간 국내보험산업 시장규모 및 트렌드 분석 / 동향분석팀 2000.11
2000-10	보험회사의 판매채널믹스 개선방안 연구 / 정홍주 2000.12

2001-1	사이버시장 분석 및 향후 과제 / 안철경, 장동식	2001.1
2001-2	OECD 국가의 생명보험산업 현황 및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정세창, 권순일, 김재봉	2001.1
2001-3	손해보험 중목별 투자수익 산출 및 효율 적용 방안 / 이희춘, 조혜원	2001.1
2001-4	생명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분석 / 류건식, 이경희	2001.3
2001-5	보험회사의 북한 진출에 관한연구 / 신동호, 안철경, 박홍민, 김경환	2001.3
2001-6	생명보험회사의 예정이율 리스크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도수	2001.4
2001-7	보험회사 CRM에 관한 연구: CRM 성공요인 및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 안철경, 조혜원	2001.8
2001-8	생명보험산업의 자산운용규제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김재현, 이경희	2001.10
2001-9	건강보험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확대방안 / 박홍민, 김경환	2001.10
2001-10	노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민영장기간병보험 발전방안 / 김기홍	2001.12
2001-11	국제보험회계기준 연구 / 김해식	2001.12
2002-1	국내외 보험사기 관리 실태 분석 / 안철경, 김경환, 조혜원	2002. 3
2002-2	기업연금시장 활성화와 보험회사 대응전략 / 박홍민, 이경희	2002. 3
2002-3	보험회사 리스크 감독 및 관리방안 연구 / 류건식, 정석영, 이정환	2002. 5
2002-4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 / 신문식, 김경환	2002. 5
2002-5	생명보험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천일영, 신동현	2002. 10
2002-6	생명보험회사의 고객유지전략 / 신문식, 장동식	2002. 10
2002-7	방카슈랑스 환경에서의 보험회사 대응전략 / 정세창, 박홍민, 이정환	2002. 12
2002-8	생명보험사 보험리스크 평가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신동현, 배윤희	2002. 12

- 2003-1 민영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 선진화 방안 / 오영수, 이경희 2003. 3
- 2003-2 보험회사의 실버산업 진출방안 / 박홍민, 권순일, 이한덕 2003. 3
- 2003-3 보험회사 사이버마케팅의 활용전망 / 신문식, 장동식 2003. 3
- 2003-4 생명보험사 RAS체제에 관한 연구 / 류건식, 김해식, 정석영 2003. 7
- 2003-5 보험소비자를 위한 보험교육방안 / 이기형, 조재현 2003. 11
- 2003-6 보험설계사 조직의 개편방안 / 신문식, 이경희, 이정환 2003. 12
- 2004-1 부유층 시장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사업 운영방안 / 신문식, 이경희 2004. 3
- 2004-2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태열 2004.7
- 2004-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전략 / 류건식, 김세환 2004.7
- 2004-4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 임병인, 김세환 2004.9
- 2004-5 신용리스크 전가시장과 보험회사 참여에 대한 연구 / 주민정, 조재현 2004.10
- 2004-6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마케팅 전략 / 류건식, 신문식, 정석영 2004.12
- 2004-7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이순재 2005.1
- 2005-1 보험산업의 비전과 대응전략 / 신문식, 임병인, 조재현 2005.
- 2005-2 전환기의 손해보험회사 발전방안 / 정중영 2005.
- 2005-3 손해보험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나우승, 김해식 2005.5
- 2005-4 저금리 추이에 따른 이차역마진 현상과 대응방안 / 김석영, 나우승 2005.9
- 2005-5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평가와 개선방안 / 류건식, 김해식 2005.10
- 2005-6 모집조직 다변화에 따른 보험모집제도 개선방안 / 신문식, 조재현, 박정희 2005.11
- 2005-7 퇴직연금제도 재정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상우 2005.11

2005-8	민영건강보험의 의료비 지급·심사제도 개선방안 / 조용운, 김세환	2005.11
2005-9	보험산업 주요지표의 중장기 전망 / 동향분석팀	2005.12
2006-1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방안 / 류근옥	2006.1
2006-2	보험시장의 퇴출 분석과 규제개선방향 / 김현수	2006.3
2006-3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 안철경, 이상우	2006.8
2006-4	보험회사의 리스크공시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경희	2006.12
2007-1	국제보험회계기준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 이장희, 김동겸	2007.1
2007-2	민영건강보험료율 결정요인 분석 / 조용운, 기승도	2007.3
2007-3	퇴직연금 손·익 위험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07.3
2007-4	확률적 프런티어 방법론을 이용한 손해보험사의 기술효율성 측정 / 지홍민	2007.3

■ 연구조사자료

- 96-1 주요국의 보험브로커제도 및 관련법규 현황 / 김가홍, 김평원, 정봉은, 유지호 1996.2
- 96-2 독일 보험감독법 1996.2
- 96-3 주요국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현황 / 이기형, 김란, 조혜원 1996.10
- 96-4 캡티브 보험사 설립에 관한 연구 / 김평원, 오평석, 안철경, 조혜원 1996.12
- 96-5 미국 보험회사의 파산과 지불능력규제 / 이재복 1997.3
- 97-1 국제보험세미나 (IIS) 발표 논문집 (제 33차) 1997.7
- 97-2 태평양보험회의 (PIC) 발표 논문집 (제 18차) 1997.9
- 98-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 (I) / 김영옥, 차일권 1998.2
- 98-2 손해보험 가격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8.3
- 98-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8.3
- 98-4 보험회사의 적대적 M&A와 대응수단에 관한 연구 / 김호경, 박상호, 장재일 1998.8
- 98-5 MAI협상의 진전과 국내보험산업에의 시사점 / 정영철, 한성진 1998.8
- 98-6 보험회사의 리스크 증대와 대응 / 이기형, 박중영, 장기중 1998.10
- 98-7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 : 의료사고위험을 중심으로 / 신동호, 차일권 1998.11
- 99-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I) : 임원배상책임보험 / 엄창희 1999.1
- 99-2 최근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현황 및 제도 변화 / 김호경, 박상호 1999.3
- 99-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9.3
- 99-4 미국의 퇴직연금 회계제도 연구 / 김해식 1999.6
- 99-5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 외국사례 및 생명보험산업을 중심으로 / 정봉은, 이승철 1999.7
- 99-6 주요국의 보험법제 비교 / 이원돈, 정봉은, 신동호, 안철경 1999.7
- 99-7 지진재해와 지진보험 : 일본의 지진보험을 중심으로 / 이상우 1999.7

99-8	주요국의 보험계리인제도 / 최용석, 노병윤	1999.8
99-9	생명보험 계약심사제도 / 장강봉	1999.11
99-10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2000.2
2000-1	세계 재보험시장의 발전과 규제환경 / 엄창희	2000.3
2000-2	보험사의 지식경영 도입방안 / 김해식	2000.3
2001-1	보험회사 겸업화 추세와 국내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 이경희	2001.1
2001-2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보험2본부	2001.1
2001-3	지방재보험 제도 도입방안 / 안철경, 엄창희	2001.3
2001-4	금융·보험 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 조사 / 동향분석팀	2001.3
2001-5	종업원복지 재구축을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박홍민, 이한덕	2001.6
2001-6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 / 보험1본부	2001.11
2001-7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I) / 보험연구소	2001.11
2002-1	보험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 / 보험연구소	2002.3
2002-2	국내 유사보험 감독 및 사업현황 / 김진선, 안철경, 권순일	2002.9
2003-1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3
2003-2	보험회사의 경영리스크 관리방안 / 천일영, 주민정, 신동현	2003.3
2004-1	2004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4.3
2004-2	보험회계의 국가별 비교 / 김해식	2004.
2005-1	금리 시나리오 생명모델 연구 / 김석영	2005.3
2005-2	2005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신문식, 김세환, 조재현	2005.3
2006-1	2006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세환, 조재현, 박정희	2006.3

2006-2 주요국 방카슈랑스의 운용사례 및 시사점 / 류건식, 김석영, 이상우, 박정희, 김동겸 2006.7
 2007-1 보험회사 경영성과 분석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 류건식, 장이규, 이경희, 김동겸 2007.3
 2007-2 보험회사 브랜드 전략의 필요성 및 시사점 / 최영목, 박정희
 2007-3 200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오승철
 2007-4 주요국의 퇴직연금개혁 특징과 시사점 / 류건식, 이상우

■ 연구논문집

-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정책연구자료

- 97-1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분석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7.10
 97-2 '9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보험연구소 1997.11
 98-1 '9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보험연구소 1998.11
 99-1 200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보험연구소 1999.11
 99-2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산업 중심으로 / 이승철 1999.12
 2000-1 200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보험연구소 2000.10
 2001-1 신용보험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신동호, 김경환 2001.1
 2001-2 200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보험연구소 2001.11
 2001-3 세계금융서비스 산업의 점업화와 감독기구의 통합 및 시사점 / 정세창, 권순일 2001.12
 2002-1 200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팀 2002.11
 2003-1 주요국의 방카슈랑스 규제 / 안철경, 신문식, 이상우, 조혜원 2003.7
 2003-2 200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팀 2003.12

- 2004-1 200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팀 2004.11
- 2005-1 영국 통합금융업법상 보험업의 일반성과 특수성 /한기정 2005.2
- 2005-2 200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팀 2005.12
- 2006-1 200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팀 2006.12
- 2006-2 의료리스크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배상보험에 대한 연구 / 차일권, 오승철 2006.12
- 2007-1 퇴직연금 수탁자리스크 감독방안 / 류건식, 이경희 2007.2
- 2007-2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 차일권, 이상우 2007.3
- 2007-3 퇴직연금 비급보증제도의 효율체계에 관한 연구: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이봉주 2007.3
- 2007-4 보험고객정보의 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상충문제 해소방안 / 김성태 2007.3
- 2007-5 방카슈랑스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안철경, 기승도, 이경희 2007.4

- 1호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 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 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 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 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 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4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2
- 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5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8
- 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6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6.10
- 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7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7.9

■ Insurance Business Report

- 1호 일산생명 파산과 시사점 / 이기형 1997.5
- 2호 OECD 회원국의 기업연금제도 / 정재욱, 정영철 1997.10
- 3호 손해보험의 금융재보험 동향 / 이기형, 김평원 1997.11
- 4호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과 보험산업 / 김호경 1997.12
- 5호 멕시코 보험산업의 IMF 대응사례와 시사점 / 정재욱 1998.3
- 6호 주요국 기업연금보험 개요 및 세제 / 양성문 1998.3
- 7호 일본의 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대응 / 이기형, 장기중 1998.5
- 8호 구조조정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전략: 상품, 마케팅, 자산운용, 재무건정성을 중심으로 / 노병윤, 안철경, 이승철 1999.2
- 9호 보험산업에서의 정보기술(IT)의 활용: 손해보험 중심으로 / 최용석 1999.3
- 10호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영향과 대책 / 박중영 1999.3
- 11호 IMF체제 이후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와 전망 / 양성문, 김해식 1999.3
- 12호 최근의 환경변화와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강중철, 목진영 1999.10
- 13호 21세기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보험회사의 전략적 대응방안 / 오영수, 최용석, 이승철 1999.12
- 14호 중국의 WTO 가입과 보험시장 개방 / 정희남 2002.4
- 15호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보험산업의 영향과 대응 / 동향분석팀 2002. 9
- 16호 2010년 보험산업 트렌드 분석 및 시사점 / 조혜원 2003.5
- 17호 유럽보험회사 파산사례의 리스크 분석 및 감독방안 / 신동현 2003.5
- 18호 미국 배상책임보험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 / 이기형, 조재현 2003.8
- 19호 공영기업의 보험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보험사 CEO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이기형, 김해식 2004.10
- 20호 선진 보험사 재무공시 특징 및 트렌드(유럽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 장이규 2006.11
- 21호 지급여력 평가모형 트렌드 및 국제비교 / 류건식, 장이규 2006.11
- 22호 선진보험그룹 글로벌화 추세와 시사점 / 안철경, 오승철 2006.12
- 23호 미국과 영국의 손해보험 직관시장 동향분석 및 시사점 / 안철경, 기승도 2007.7
- 24호 보험회사의 자본비용 추정과 활용: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이경희 2007.7
- 25호 영국손해보험의 행위규제 적용과 영향 / 이기형, 박정희 2007.9

■ CEO Report

- 2000-1 일본 제일화재의 파산에 따른 국내 손보산업에의 시사점 / 양성문, 김혜성 2000. 5
- 2000-2 일본 제백생명의 파산에 따른 국내 생보산업에의 시사점 / 보험연구소 2000. 6
- 2000-3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보험회사 자산운용 개선방안/김재현 2000. 10
- 2000-4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활동과 기대효과 / 안철경 2000. 11
- 2001-1 부동산권리보험 도입현황과 시사점 / 신문식, 권순일 2001. 8
- 2001-2 자동차보험 가격경쟁 동향과 향후과제 / 서영길, 기승도 2001. 8
- 2001-3 일반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 이희춘, 문성연 2001. 10
- 2002-1 금융 재보험의 도입과 향후과제 / 보험연구소 2002. 4
- 2002-2 PL법 시행에 따른 PL보험 시장전망과 선진사례 시사점 / 손해보험본부 2002. 6
- 2002-3 종신보험상품의 예상 리스크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2. 6
- 2002-4 주 5일 근무제와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본부 2002. 9
- 2002-5 CI(Critical Illness)보험의 개발과 향후 운영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2. 10
- 2002-6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2. 10
- 2003-1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 장기손해보험팀 2003. 2
- 2003-2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 3
- 2003-3 인구의 노령화와 민영보험의 대응 / 오영수 2003. 6
- 2003-4 국가재해관리시스템 개편에 따른 보험제도 운영방향 / 손해보험본부 2003. 7
- 2003-5 생명보험산업에서의 경험통계 활용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3. 7
- 2003-6 OECD의 기업연금 재정안정화 논의와 시사점 / 동향분석팀 2003. 8
- 2003-7 퇴직연금시장 전망과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류건식, 남효성, 박홍민 2003. 12
- 2004-1 자동차보험 예정기초율 연구 및 전략적 시사점 /자동차보험본부 2004. 2
- 2004-2 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제휴 성공전략 / 연구조정실 2004. 2
- 2004-3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와 향후과제 / 생명보험본부 2004. 2
- 2004-4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원인 분석 및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 2
- 2004-5 생명보험가입자의 사망원인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 3

2004-6 역모기지 (Reverse Mortgage) 시장전망 및 대응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4. 3

2004-7 자동차 보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 4

2004-8 EU 지급여력제도 개선추세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 6

2004-9 퇴직연금시대 도래와 보험회사의 진입전략 / 보험연구소 2004. 7

2004-10 자동차보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 4

2004-11 손보사의 자연재해보험시장의 참여전략 / 손해보험본부 2004. 9

2004-12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해외보험사 CEO들의 인식과 시사점 / 보험연구소 2004. 10

2004-13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4. 11

2004-14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도입과 향후과제 / 손해보험본부 2004. 12

2005-1 생명보험 계약자 속성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5. 3

2005-2 민영건강보험의 리스크관리 방안 / 보험연구소 2005. 4

2005-3 차명모델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도입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5. 3

2005-4 FY2005 수입보험료 전망 / 보험연구소 2005. 6

2005-5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차량수리비 관리방안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5. 7

2005-6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와 CAT 모델 / 손해보험본부 2005. 7

2005-7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감소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5. 7

2005-8 국가 임조기검진 사업 및 국민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암보험 대응방안 / 보험연구소 2005. 10

2006-1 생보사 개인연금보험 생존리스크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6. 1

2006-2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운용전략 / 보험연구소 2006.1

2006-3 생보사 FY2006 손익 전망 및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2

2006-4 의무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 손해보험본부 2006.2

2006-5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분석 및 과제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2006-6 보험사기 관리실태와 대응전략 / 정보통계본부 2006.3

2006-7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급 적정화 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2006-8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6.4

2006-9	날씨위험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의 역할 강화 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4
2006-10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손익관리를 중심으로- / 손해보험본부	2006.5
2006-11	자동차 중고부품 활성화 방안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6.5
2006-12	장기간병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방향 / 보험연구소	2006.6
2006-13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안 / 보험연구소	2006.7
2006-14	생명보험 가입형태별 위험수준 분석 / 리스크 통계관리실	2006.8
2006-15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보험연구소	2006.9
2006-16	모기지보험의 시장규모 및 운영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9
2006-17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현황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10
2006-18	자동차보험 온라인시장의 성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6.10
2007-1	퇴직연금제 시행 1년 평가 및 보험회사 대응과제 / 보험연구소	2007.4
2007-2	외국의 협력정비공장제도 운영현황과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7.4
2007-3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 및 과제 / 보험연구소	2007.6
2007-4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 / 보험연구소	2007.7

정기간행물

☒ 월간	_____
☐ 보험통계월보	
☒ 계간	_____
☐ 보험동향	
☐ 보험개발연구	
☒ 연간	_____
☐ 보험통계연감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구분 내용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간행물별로 다름
제공자료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 (8~10회/년) • 조사연구자료 (3~5회/년) • 정책연구자료 (3~5회/년) • 기타 보고서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 (8~10회/년) • 조사연구자료 (3~5회/년) • 정책연구자료 (3~5회/년) • 기타 보고서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 (8~10회/년) • 조사연구자료 (3~5회/년) • 정책연구자료 (3~5회/년) • 기타 보고서	-보험개발연구 (연간 3회~4회 ₩ 30,000) -보험통계월보 (월간 ₩ 50,000) -보험동향 (계간 ₩ 20,000)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 (3~4회) • 보험동향 (계간)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 (3~4회) • 보험동향 (계간)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 -보험통계월보 -손해보험통계연보 -영문발간자료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개발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368-4230, 4407 팩스 : 368-4099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67-25-0014-382) / 한미은행 (110-55016-257)
- 예금주 : 보험개발원
- 지로번호 : 6937009

가입절차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서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개발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종로서적, 영풍문고, 을지서적, 서울문고, 세종문고
 부산 : 영광서적

저자약력

이 기 형

국민대학교 경영학 박사

전 보험개발원 해상보험팀장, 특종보험팀장, 화재해상팀장

전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전 보험개발원 손해보험본부 본부장

현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선임연구위원

(kihlee@kidi.or.kr)

연구조사자료 2007-5

지적재산권 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발행일	2007년 10월	일	
발행인	정	채	웅
편집인	유	형	균
발행처	보험개발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02) 368-4000	
인쇄소	신우씨앤피		

ISBN 978-89-5710-056-1

定價 10,000원